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731-6111

# 서울시보

선	기관의장
람	

제2905호 2009. 4. 23.(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09-721호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4
제2009-728호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1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 : 00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수송

→

D일 보급

※ 중복된 공고(신문,관보,시보,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제2009-739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제2009-756호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6
제2009-764호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고 시	
제2009-160호 건축허가제한 대상구역 지형도면 .....	9
제2009-16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11
제2009-16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12
제2009-164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수수료 추가 .....	13
제2009-16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	14
제2009-166호 도시관리계획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15
제2009-167호 불광 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	21
제2009-168호 도시관리계획 『부암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24
제2009-169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26
제2009-170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	27
제2009-171호 도시관리계획(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	29
◆공 고	
제2009-710호 문화재수리업자 .....	30
제2009-72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	30
제2009-72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등록취소 .....	31
제2009-72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	31
제2009-740호 도시계획시설(능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안) 열람 .....	34
제2009-757호 다단계판매업자 폐업신고 .....	35
제2009-759호 공인 등록 .....	35
제2009-762호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계획 .....	35
제2009-765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	44
제2009-772호 다단계판매업 변경등록신고 .....	44
제2009-773호 신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	44
◆구 고 시	
제2009-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종로구) .....	47
제2009-20호 금호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성동구) .....	51
제2009-22호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성동구) .....	51
제2009-23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성동구) .....	54
제2009-26호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광진구) .....	55
제2009-30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동대문구) .....	56
제2009-24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 인가(강북구) .....	59

제2009-1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사적제440호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토지보상)실시계획인가(노원구) .....	59
제2009-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은평구) .....	62
제2009-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 작성(서대문구) .....	64
제2009-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서대문구) .....	68
제2009-2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강서구) .....	70
제2009-30호 도시계획시설(은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구로구) .....	70
제2009-31호 갈매소공원 조성계획결정(구로구) .....	75
제2009-32호 와룡소공원 조성계획결정(구로구) .....	78
제2009-34호 무궁화소공원 조성계획결정(구로구) .....	81
제2009-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동작구) .....	84
제2009-24호 신림7-1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관악구) .....	91
제2009-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지하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송파구) .....	92

◆ 구 공 고

제2009-371호 도시계획사업(철도)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광진구) .....	93
제2009-3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중랑구) .....	95
제2009-3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열람(도봉구) .....	101
제2009-372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강서구) .....	104
제2009-310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구로구) .....	105
제2009-331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열람(서초구) .....	107
제2009-3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강동구) .....	109
제2009-308호 건축허가제한(강동구) .....	110

◆ 사업소고시

제2009-61호, 62호, 63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	111
제2009-64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	112

◆ 사업소공고

제2009-2호 방화관리자 업무 자격 정지(용산소방서) .....	113
제2009-23호 방화관리자 업무정지처분(광진소방서) .....	113
제2009-2호 방화관리자 업무정지(중랑소방서) .....	115
제2009-4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성북소방서) .....	116
제2009-5호 방화관리자 업무정지(성북소방서) .....	116
제2009-3호 방화관리자 자격(업무)정지(노원소방서) .....	116
제2009-21호 소방시설업 등록(서대문소방서) .....	117
제2009-4호 소방시설업 등록(강서소방서) .....	117
제2009-15호 방염처리업체 행정처분(구로소방서) .....	117
제2009-16호 방화관리자 업무정지(구로소방서) .....	118
제2009-19호 소방시설업 등록(강남소방서) .....	120
제2009-11호 방화관리자 업무정지(송파소방서) .....	120

## 자 치 법 규

###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21호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등의 소방활동 수행중의 안전사고방지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소방방재청훈령)이 제정·발령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소방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12(예장동 6-7) 소방재난본부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 소

방행정과(전화 02)3706-1311, FAX:02)3706-1319, E-mail: wnsankhy@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28호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경미한 수리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함

-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및 거름주기
  -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등
- 다.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신설함
-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경우
- 라. 공개제한의 고시,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마. 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문화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을지로별관1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과[전화:02)2171-2585~6, FAX:02)2171-2589, E-mail:namoo@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39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례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교통운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영담당관(전화 : 02) 3707-8123, FAX : 02)3707-9829, E-mail : aimit@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일부개정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56호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우리시의 건축현황·여건변화 및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우수한 건축물 등의 보존 및 관리, 공적공간의 유지관리 등 건축정책이 포함된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 나.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문화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전시·교육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재정·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다. 우리시의 건축디자인 기준에는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실효성 확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후 건축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지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30명 이내의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 바.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축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서울건축포럼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건축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15(서소문동 37) 시청별관 2동 6층, 우편번호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3707-8271, FAX : 3707-8269 E-mail : yoon707@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64호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 상징물의 통일성 확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서울색을 적용하여 서울특별시의 CI(City Identity)를 개선하고, 새로운 상징으로 “해치”를 선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의 휘장 및 브랜드를 서울색을 적용한 CI 이미지로 변경함.

나. “Hi Seoul” 브랜드에 새로운 시정 비전과 목표에 부합되는 서비스 로건 “SOUL OF ASIA”를 추가함.

다. 서울의 상징으로 새로 선정된 “해치”를 심벌로 규정하고, 기존 캐릭터인 “왕범이”는 삭제함.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  
⇒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마케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케팅담당관[전화 : 02)3707-8452, FAX : 02)3707-8459, E-mail : kkangzoo@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고 시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60호 건축허가제한 대상구역 지형도면

일간신문(서울신문, 전국매일), 강동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건축허가제한

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강동구 천호동  
461-27번지 일대 한강변 주거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  
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 1. 건축허가제한 대상구역

위 치	면적(m <sup>2</sup> )	건축허가제한기간
강동구 천호동 461-27번지 일대 한강변 주거지역	94,643m <sup>2</sup>	2009. 4. 24 ~ 2010. 4. 23 ※ 고시일로부터 1년간

#### 2. 지형도면등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건축기획과 및 강동  
구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3. 관련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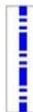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  
택국 건축기획과(☎6361-3946), 강동구  
도시계획과(☎ 480-138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천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허가제한도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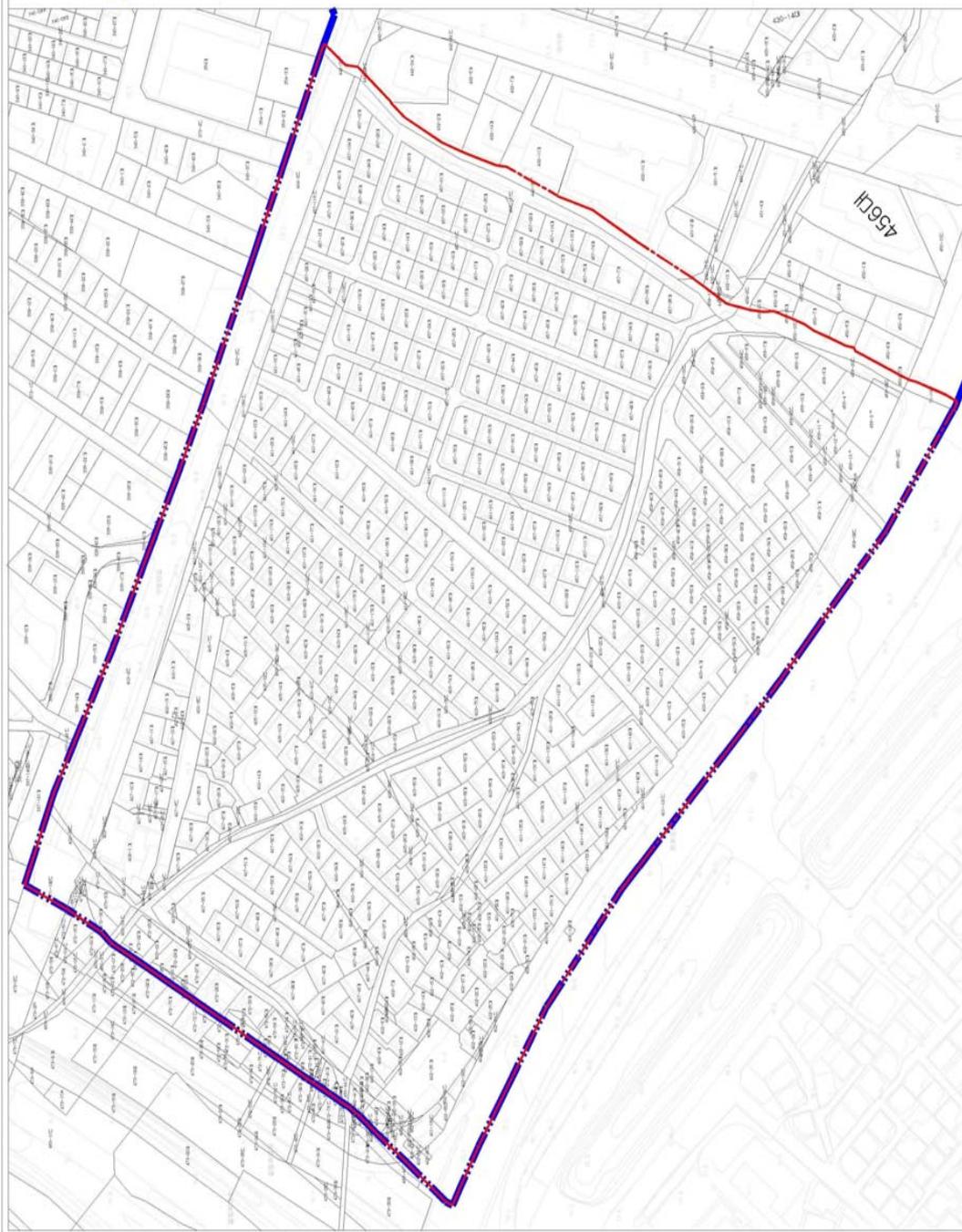
건축허가제한지역



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



Scale 1 : 1,5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6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85-318호(1985.7.2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92호(2001.4.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40호(2008.7.17)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건국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진구 화양동 1 일대 건국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기숙사) 증설에 따른 변경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학 교	대 학 (건국대학교)	광진구 화양동 1 일대	460,443.2	-	460,443.2	서고 제318호 (1985.7.20)	

3.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이용계획(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학교 (건국대학교)	광진구 화양동 1 일대	계	460,443.2	-	460,443.2	
			건축부지	80,892.6	-	80,892.6	
			녹지부지	42,529.2	-	42,529.2	
			조경부지	112,776.9	감) 5,883.9	106,893.0	
			수경부지	34,434.7	증) 5,883.9	40,318.6	
			도로부지	51,427.8	-	51,427.8	
			주차장부지	64,592.0	-	64,592.0	
			광장부지	33,929.5	-	33,929.5	
			운동장부지	39,860.5	-	39,860.5	

나.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이의 범위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	18% 이하	18% 이하	75% 이하	76% 이하	12층 이하	12층 이하	7층 이하

다.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m <sup>2</sup> )		건물연면적(m <sup>2</sup> )		층수 (지상/지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신축	73	제2차 민자기숙사	1,450.00	1,450.00	19,668.00	21,921.37	12/1	15/1	건축계획변경 (3개층 수직증축)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높이 등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조서 포함)에 의함.

- 4.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83) 및 광진구 도시디자인과(☎ 450-769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6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동대문구공고 제2009-166호(2009.2.23)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 변경결정 열람공고한 동대문구 회기동 1-5호 일대(경희대학교)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가.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희대학교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교육시설 확충과 청량근린공원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경관	자연 경관	동대문구 회기동 1-5일대	897,092	증) 3,929	901,021	'41.3.25	월곡지구 경희대학교 내 60,382m <sup>2</sup> 해제, 64,311m <sup>2</sup> 지정

다. 관계도면 : 생략(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구청 도시계획부서 비치 도면 과 같음)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6360-4742) 및 동대문 도시계획과(☎ 2127-4583)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64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수수료 추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추가시험 항목 대한 품질시험 확인시 소요되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가. 추가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 : 별첨  
 나.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 발행 수입증지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02-3462-6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

연번	시험구분	시험항목	KS	단위	시험비용 (원)	처리기한 (일)	비 고
1	알루미늄	인장, 연신율	D 6763	조	48,950	4	추가(신규)
2		항복강도	D 6763	"	48,950	4	추가(신규)
3		인장, 연신율 항복강도	D 6763	"	70,300	4	추가(신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6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  
**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74-99호(1974.07.1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40호(2008.04.24)로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47-1번지 일대 광운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및 운동장 부지 개발(광운스퀘어)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전체	학교	대학 (광운대학교)	노원구 월계동 447-1 일대	62,838.0	증) 27.0	62,865.0	747.15 (서고 제99호)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정정 (증)27.0m <sup>2</sup>	
제1캠퍼스			노원구 월계동 447-1 일대	44,348.0	증) 27.0	44,375.0			
제2캠퍼스			노원구 월계동 466 일대	12,751.0	-	12,751.0			변경없음
제3캠퍼스			노원구 월계동 500-40 일대	5,739.0	-	5,739.0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시설의 구분	토지이용계획면적 (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교	노원구 월계동 447-1 일대	학교전체	계	62,838.00	증) 27.00	62,865.00
				건축부지	16,505.00	증) 9,291.00	25,796.00
				녹지부지	4,675.00	-	4,675.00
				조경부지	13,252.00	감) 6,245.00	7,007.00
				도로부지	11,688.00	증) 3,264.00	14,952.00
				주차장부지	2,651.00	감) 1,971.00	680.00
				광장부지	6,694.00	감) 623.00	6,071.00
				운동장부지	7,373.00	감) 3,689.00	3,684.00

※ 캠퍼스별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나. 건축계획(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층수)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 주거지역(12층)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전 체	59 이하	59 이하	26.2 이하	41 이하	156 이하	156 이하	125 이하	132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7층 이하	7층 이하	12층 이하	12층 이하
제1캠퍼스	-	-	23.4 이하	45 이하	-	-	121.8 이하	132 이하	-	-	7층 이하	7층 이하	12층 이하	12층 이하
제2캠퍼스	-	-	47.2 이하	48 이하	-	-	190.1 이하	191 이하	-	-	7층 이하	7층 이하	12층 이하	12층 이하
제3캠퍼스	59 이하	59 이하	-	-	155.8 이하	156 이하	-	-	4층 이하	4층 이하	7층 이하	7층 이하	-	-

다. 건축물 신축계획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면적(㎡)		건축물높이(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철거	박 물 관	1,181.49	-	5,483.29	-	5,096.15	-	지하1층 지상5층	-	
신축	광운스퀘어	-	10,472.62	-	45,478.36	-	9,367.93	-	지하4층 지상3층	운동장

- 4.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노원구 도시디자인과(전화 950-3869)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66호  
도시관리계획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75호(2006.03.09)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1호(2008.01.24)로 변경결정된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위원회(2009.04.0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역촌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하여 향후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원녹지개념인 경관광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광장) 결정(변경) 사항임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역촌동 17-1일원	109,343	-	109,34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7호 (2004. 2. 25)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109,343.00	-	109,343.00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925.00	-	1,925.00	1.76	
	제3종일반주거지역	62,528.09	-	62,528.09	57.19	
	준주거지역	44,889.91	-	44,889.91	41.05	

## 나.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①	진흥로	일반 미관지구	역촌1동 27-9 ~ 역촌1동 17-1	3,559	179	양측 12m	2002.5.25	
②	서오릉로	일반 미관지구	녹번동 154-1 ~ 대조동 179-8	6,749	435	양측 12m	1982.4.22	
③	응암로	일반 미관지구	녹번동 162-1 ~ 녹번동 144-55	5,925	335	양측 12m	1982.4.22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 로

■ 도로총괄표 : 변경없음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3	3,396	39,154	-	-	-	8	1,413	20,778	25	1,983	18,376
대로	2	770	21,329	-	-	-	1	435	12,954	1	335	8,375
소로	31	2,626	17,825	-	-	-	7	978	7,824	24	1,648	10,001

주) ( )는 구역내 연장이고, 면적은 대상지내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2	30~33	주간선 도로	6,790 (435)	녹번동	용두리928 (창릉천)	일반 도로		1963.12.24	녹번동153-65~153-11간(63m) 폭원확장 (30m→33m)
기정	대로	3	33	25	보조간선 도로	4,740 (335)	북가좌동	불광동	일반 도로		1966.6.21	녹번동161-1 도로용지에 편입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51	대조동 33-59	대조동 64-11	일반 도로		1969.1.18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750 (220)	대조동 3-82	대조동 179-8	일반 도로		1969.1.18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17	대조동 45-2	대조동 59-88	일반 도로		1969.1.18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87	녹번동 152-72	녹번동 152-15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305	역촌1동 17-19	역촌1동 16-2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16	역촌1동 16-7	역촌동 16-14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82	역촌1동 27-32	역촌1동 27-47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0	대조동 59-36	대조동 59-36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26	대조동 59-55	대조동 59-5	일반 도로		2006.3.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14	대조동 59-61	대조동 43-1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63	대조동 179-32	대조동 59-48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68	대조동 179-48	대조동 59-69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6	4~6	국지 도로	79	녹번동 144-57	녹번동 147-2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132	녹번동 146-4	녹번동 144-58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55	녹번동 144-29	녹번동 144-35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9	4~6	국지 도로	69	녹번동 80-3	녹번동 144-45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83	녹번동 80-30	녹번동 80-25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67	녹번동 80-34	녹번동 152-76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88	역촌1동 17-5	역촌1동 17-48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67	역촌1동 17-15	역촌1동 17-31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94	녹번동 153-39	녹번동 153-16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131	녹번동 153-21	녹번동 153-47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32	녹번동 162-2	녹번동 162-1	일반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90	녹번동 80-40	녹번동 152-15	일반 도로		1977.4.27	
기정	소로	3	19	4~6	특수 도로	48	대조동 38-52	대조동 59-46	보행자 전용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20	3	특수 도로	23	녹번동 144-21	녹번동 144-60	보행자 전용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21	4	특수 도로	9	녹번동 144-21	녹번동 144-63	보행자 전용 도로		2006.3.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2	4	특수 도로	18	녹번동 80-2	녹번동 144-72	보행자 전용 도로		2006.3.9	
기정	소로	3	33	6	국지 도로	135	대조동 59-51	대조동 3-59	일반 도로		1969.1.18	
기정	소로	3	34	6	국지 도로	100	대조동 42-3	대조동 33-59	일반 도로		1969.1.18	
기정	소로	3	47	6	국지 도로	254 (47)	녹번동 137-32	녹번동 146-2	일반 도로		1969.1.18	

주) ( )는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접도길이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지하)	노외 주차장	녹번동 153-1일원	5,702.5	감)2.4	5,700.1	2006.3.9 서울시고시 2006-75	광장과 중복 결정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지하)	면적 감소 - 2.4㎡감소	○측량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2.4㎡ 감소하여 변경하고자 함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공 원 (역촌오거리문화 공원)	주제공원 (문화공원)	녹번동 153-1일원	5,702.5	감)5,702.5	-	2006.3.9	주차장(지하)과 중복결정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역촌오거리 문화공원	공원 폐지 5,702.5㎡ → 0㎡	○공원을 폐지하고 향후 녹번천 복원 등과 함께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원녹지 개념의 경관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광장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③	광 장 (녹번천 경관광장)	경관광장	녹번동 153-1일원	-	증)5,700.1	5,700.1		주차장(지하)과 중복결정

■ 광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광장 (녹번천 경관광장)	경관광장 신설 0㎡ → 5,700.1㎡	○공원을 폐지하고 향후 녹번천 복원 등과 함께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원녹지 개념의 경관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 결절점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함 ○또한 측량결과에 따른 당초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보다 2.4㎡ 감소되어 감소된 면적으로 결정하고자 함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가. 건축물의 밀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나. 건축물의 높이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다. 건축물 배치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④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위원회(제3분과) 조건부가결 사항
    - 경관광장 조성계획시 각각부분에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하여 가시성이 확보되도록 개방적으로 조성할 것
    - 지하주차장 활용이 원활하도록 주차장 출입 및 동선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 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시 자연 채광 및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4.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신 규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	15,760.00	

다. 정비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 <sup>2</sup> )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	15,760.00	15,760.00	1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	증) 1,944.00	1,944.00	12.33	
	공원	-	증) 578.00	578.00	3.67	소공원
	도로	-	증) 1,366.00	1,366.00	8.66	
택 지	소 계	-	13,816.00	13,816.00	87.67	
	택지1	-	증) 11,835.00	11,835.00	75.10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택지2	-	증) 1,981.00	1,981.00	12.57	종교시설(교회)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6361-3550), 은평구 도시계획과(☎ 02-350-1388)에 비치합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67호  
불광 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불광 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85	불광동 285-54	불광동 603-1	일반 도로	불광1 동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5호 (2001.6.25)	부분 확 폭 (6M→12M)
변 경	중로	3	1	12	국지 도로	285 (161)	불광동 285-54 (606-17)	불광동 603-1	일반 도로	불광1 동길	-	
기 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92	불광동 600-4	불광동 603-1	일반 도로	덕바 위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9호 (2001.2.6)	확 폭 (12M→15M)
변 경	중로	2	1	15	국지 도로	80	불광동 600-4	불광동 603-1	일반 도로	덕바 위길	-	
기 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58	불광동 600-4	불광동 600-12	일반 도로	덕바 위1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9호 (2001.2.6)	확 폭 (6M→10M)
변 경	소로	1	2	10	국지 도로	50	불광동 600-4	불광동 600-12	일반 도로	덕바 위1길	-	

\* ( ) 는 구역내 연장 및 지변을 표기한 것임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	공 원	소공원	불광동 600-6 번지 일대	-	증)578.00	578.00		

3)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 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규	불광제8주택재 개발정비 구역	15,760.00	-	-	불광동 600 번지 일대	9	3	-	6	-	철거 100동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택지 구분	위 치	면 적 (㎡)	건축계획				
	명칭	면 적 (㎡)				건폐율 (%)	상 한 용적률 (%)	층 수(층)	연면적 (㎡)	주된용도
신설	불광 제8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15,760.00	택지 1	도면 참조	11,835.00	30 이하	223.58 이하	평균16층 이하	44,861.74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 2	"	1,981.00	관계법규에 의함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비율: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li> <li>- 임대주택은 전체건립세대수의 17%이상 건설</li> </ul>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법규에 의함							

##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관리처분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불광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증) 62 세대 (임대44세대포함)	이상없음	

## 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전용면적 (㎡)	세대수	비 고
불광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1	-	30.80	16	17.32%
				40.70	16	
				50.80	12	
				합 계	44	

6)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소 계	15,760.00	-	15,760.00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5,760.00	감) 15,76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 15,760.00	15,760.00	100.00	

2.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은평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3707-8238) 및 은평구청 주택과(☎ 02)350-1382)에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68호  
도시관리계획 『부암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2004.4.20), 종로구 고시 제2007-24호(2007.5.17)로 결정된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제3분과 위원회(2009.3.18)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

획시설』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16호(2004.4.20), 종로구고시 제2007-24호(2007.5.17)로 결정된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공지를 지역주민편의과 부족한 주차공간 확대를 위하여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주차장)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없음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부암동 306-10호 일대	149,041	-	149,04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16호 (2004.4.20)	-

-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지구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9,041	-	149,041	100.0	
주거지역	소 계	144,690	-	144,690	97.1	
	제1종전용주거지역	139,930	-	139,930	93.9	
	제1종일반주거지역	4,760	-	4,760	3.2	
녹지지역	소 계	4,351	-	4,351	2.9	
	자연녹지지역	4,351	-	4,351	2.9	

나) 도시기반시설

(1) 교통시설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부암동 251-7일대	377	-	377	2004.4.20	
기정	2	주차장	부암동 278-16일대	323	-	323	2004.4.20	
기정	3	주차장	부암동 262-1일대 (지하부분)	1,731	-	1,731	2004.4.20	공공공지1과 중복결정
신설	4	주차장	부암동 370-12	-	증)598	598	-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 부암동 370-12일대 • 면적 : 598㎡	• 주민편의 및 부족한 주차공간 확대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

○ 건축범위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층수	건축제한 완화	비고
90	90	1	-	주차장 4

(2) 공간시설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부암동 262-1일대	1,731	-	1,731	2004.4.20	주차장3과 중복결정
폐지	2	공공공지	부암동 370-12일대	598	감)598	-	2004.4.20	
기정	3	공공공지	부암동 318-1일대	99	-	99	2004.4.20	
기정	4	공공공지	부암동 318-14일대	101	-	101	2004.4.20	

○ 공공공지 폐지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위치 : 부암동 370-12일대 • 면적 : 598㎡	• 주차장 신설로 폐지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상기 도시기반시설 변경 이외의 기타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51), 종로구 건축과(☎02-731-1420)에 비치합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6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 서울추모공원(묘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종합의료시설)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변경)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12호(2001. 9.26)로 결정된 서울추모공원(묘지공원)에 당초 화장장시설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하여 화장장시설, 종합의료시설,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27,911	-	127,911	1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27,911	감)69,575	58,336	45.6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69,575	69,575	54.4	

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 공원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원	묘지공원	서초구 원지동 76번지일대	127,911	감)69,575	58,336	2001. 9.25 (서고시 제312호)	

○ 종합의료시설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종합의료시설	서초구 원지동 76번지일대	-	증)69,575	69,575	-	

- 건축물의 범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종합의료시설	60%	200%	12층 이하

3. 관계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서울시특별시 시설계획과(☎02-6360-4786), 노인복지과(☎02-3707-9213)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7)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0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1. 정비구역의 지정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삼양시장정비사업
- 나. 사업시행자 : 삼양시장주식회사 (대표

서 재구)

다.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서

1) 시장정비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삼양시장 정비구역	강북구 미아동 777번지 외 2필지	6,202㎡ (인접지역 1,484㎡포함)	

2) 건축시설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용 도
5,993.55	3,594.71	21,567.85	59.98	127.62	지하2층/지상5층	판매시설 (매장면적 8,864.38㎡)

※ 기부채납 면적 208.45㎡

라. 조건 사항

- 이용 동선에 불편이 없도록 건물 출입구, 자전거 주차장, 공개공지화단 등 외부공간을 재 계획할 것
- 건물 전면부 1층에만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 외부에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토록 전면부 이외에 출입구 추가 설치, 매장 성격이 다른 2층으로는 직접 출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 지하매장 이용객을 위한 쉼터등(외부출입구 포함)을 재 계획할 것
- 단지 내 보행통로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1층 건물 내부의 지하 진출입구, 에스컬레이터 등 동선계획은 이용객이 편리하도록 재 계획할 것
-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완료할 것

마. 권고 사항

- 단지 내 보행통로의 동선확보를 위해 남측 도로 인접부 토지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주차장 출입구 주변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지형도면의 작성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및 강북구 지역경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관계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 2171-2675)과 강북구 지역경제과(☎ 901-6462)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4. 기 타

-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1호**  
**도시관리계획(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에 대하여 2009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9.04.15) 심의를 거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취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에 대하여 한강의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매력 있는 수변공간을 창출하고, 문화시설 등 공공공간의 확충 및 접근성의 개선을 통해 한강이 서울의 중심으로 '공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신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	636,757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되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역지정

3.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8324~5), 성동구청 도시개발과(☎02-2286-557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5.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02-3707-

## 공 고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10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연월일 : 2009. 4. 15.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200199	(주)시스케이프	황성광	서울 마포구 망원동 373-5 미광빌딩4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9.4.20~7.19
2	112606	우정건설(주)	우교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 97-7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9.4.20~7.19
3	200237	(주)코아정보시스템	강병욱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4-14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9.4.20~7.19
4	200241	(주)에스엔시스템	김신환	서울 송파구 석촌동 262-1중원빌딩 304호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9.4.20~7.19
5	112656	이노에이스(주)	김종식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4-1번지 서울대연구공원 내 SK연구동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9.4.20~7.19
6	130402	(주)대영아이티에스	민병갑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5-6(송현빌딩 본관 5층)	기준미달 (자본금실효)	영업정지1월 09.4.24~5.23
7	200251	(주)씨앤에이테크	강창수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2-5 동성빌딩	기준미달(기술계1)	영업정지1월 09.4.24~5.23
8	112904	(주)지케이정보기술	허완규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910-14	기준미달(자본금)	영업정지1월 09.4.24~5.23
9	113442	(주)지텍이앤씨	백승철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2	기준미달(자본금)	영업정지1월 09.4.24~5.23
10	200757	미래네트웍	조한준	서울 금천구 시흥동 985-9 2층 1호	기준미달(기능계1)	영업정지1월 09.4.14~5.13
11	200237	(주)코아정보시스템	강병욱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4-14	기준미달(기능계1)	영업정지1월 09.4.24~5.23
12	200616	(주)시큐세이버	지영호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0-13 삼환디지털벤처타워 203호	기준미달(기술계1)	영업정지1월 09.4.24~5.23

2. 등록번호 및 업종 : 03-01-0017(조경업)
3. 상 호 : 정희조경(주)
4. 대 표 자 : 유인권
5.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248-35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2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 제15조, 제66조제2호의3, 제66조제3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0조
- 3. 행정처분 일자 : 2009. 4.14
-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2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등록취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112385	지오커뮤니케이션(주)	권혁철	서울 용산구 신계동 1-170 덕성빌딩 3층	등록기준미신고	등록취소
111289	이일정보통신(주)	이일태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1차 1513호	기준미달 (자본금실효)	등록취소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 제15조, 제66조제2의3호, 제3호, 제13호,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 별표8
- 3. 행정처분 일자 : 2009. 4.14
-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02-6360-499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2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1039	2009.3.2	(주)뉴엔네트웍스 이선길 110111-3598103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84-5 구보빌딩 5층
2	201040	2009.3.3	비씨에스텍(주) 허 승 110111-325548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104번지 대정빌딩 3층
3	201041	2009.3.3	한양네트웍스(주) 우상원 110111-3990664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33-15
4	201042	2009.3.4	(주)인젠트 이병대 110111-20317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1 인영빌딩 1002호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	201043	2009.3.4	(주)도전하는사람들 서장열 110111-1751159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4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2001호,2002호
6	201044	2009.3.5	어니컴(주) 문일룡 110111-1582116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광화문빌딩18층
7	201045	2009.3.5	(주)리눅스데이터시스템 정정모 110111-259155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6-5 홍선빌딩 2층
8	201046	2009.3.6	(주)천지엔지엔 동금자 110111-3933888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트윈 테크타워 9층 에이 911호
9	201047	2009.3.6	부 올(주) 김영인 110111-3548364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87-6 2층
10	201048	2009.3.6	(주)디에스온 김경환 110111-3663047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1-17 엘크루빌딩 4층
11	201049	2009.3.11	(주)레이정보 이상욱 110111-2899825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4번지 영풍빌딩 4층
12	201050	2009.3.13	(주)맥노블정보통신 김학균 110111-375222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22-2 동우빌딩 301호
13	201051	2009.3.13	(주)자인정보기술 구을희 110111-070683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5-34 자인빌딩 4층
14	201052	2009.3.17	현대아이티에스전자(주) 전태환,최현수 131111-0035814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649-1 현대안전 능동빌딩 2층
15	201053	2009.3.19	(주)칸씨엔에스 이선남 110111-3971721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10-8 503-1호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6	201054	2009.3.19	(주)유비게이트씨엔씨 지재환 110111-3316191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스타워 2208, 2210호
17	201055	2009.3.23	(주)유비몰 조상문 110111-400982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3-9 영진빌딩 3층 302호
18	201056	2009.3.20	(주)경림이앤지 김계영 110111-298499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3-1 서교타워빌딩 1404호
19	201057	2009.3.20	(주)엘트로닉스 신명철 110111-0960008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84-1 우림이비즈센터2차 1206호
20	201058	2009.3.20	(주)아이즈비전 임채병 180111-01328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씨씨엠엠빌딩 701호
21	201059	2009.3.20	(주)한국이디에스 김형원 110111-1611056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3 삼동빌딩 5층
22	201060	2009.3.24	(주)이노피엔티 이경원 110111-338610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7층
23	201061	2009.3.31	(주)원케이블넷 박홍훈 110111-4032928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09-10 2층
24	201062	2009.3.31	에스케이텔링크(주) 김철규 110111-1533599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67
25	201063	2009.3.30	(주)네오텔링크 박귀남 110111-4036384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34-5
26	201064	2009.3.30	(주)신명파워 최훈배 110111-154364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7-214 6층 1호
27	201065	2009.3.30	양재미디어(주) 고동식 110111-1589162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6-5 금정빌딩 302호

- 1.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 2. 공사등록 일자 : 2009.3.1 ~ 2009.3.31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02-6360-499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40호  
도시계획시설(능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안) 열람**

- 1. 건교부고시 제498호(1971.8.1)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8호(2009.3.5)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광진구 능동 18번지 내 ‘서울키즈센터’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안)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안)을 열람 공고 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 1.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18번지 어린이대공원내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칭 : 서울키즈센터 건립
  - 다. 사업규모 및 내용
    - 사업내용 : 영유아의 놀이체험시설 서울키즈센터 건립
    - 부지면적 : 6,600㎡
    - 건축연면적 : 7,942.46㎡(지상3층/지하1층)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 서울특별시
  -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 마. 사업의 착수·준공 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10. 10. 까지
- 바.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실시설계 도면: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2.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3.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실(☎ 02-3707-926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02-3708-2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57호**  
**다단계판매업자 폐업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 폐업신고

신 고 인				신 고 사 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폐업일자	사 유
제2호	썸라이더코리아(주)	웬디텡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68-7	2009. 1.31.	사업 전환
제645호	(주)레가시코리아	안무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69-8 선인빌딩 4층	2009. 2.28.	다단계판매업 종료
제570호	비바산코리아(주)	토마스 교트프리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8-54 연무빌딩 2층	2009. 4. 2.	공제계약해지
제677호	(주)천웅커뮤니케이션	심재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34 해오름타워 4층	2009. 4.13.	영업부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생활경제담당관(☎ 02-3707-8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59호**  
**공인 등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공인의 등록 사항을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1. 공인 등록 사유 :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시행령 개정

2. 공인등록 내용

공인종류	등록공인명	규격	등록공인인영	등록일 (최초사용일)
직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3.0cm X 3.0cm		2009. 4. 2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62호**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계획**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념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1.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계획  
○ 지정종별 : 서울특별시 기념물  
○ 지정명칭 : 충정공 목서흠 묘역(忠貞公睦叙欽 墓域)

○ 문화재 지정대상

문화재 지정대상	소재(지정)지번	지 적	수량·면적	크기(단위:cm)	연대	소유자명(주소)
목서흙(陸叙欽)과 정경부인(貞敬夫人) 안동권씨(安東權氏) 합장묘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62번지		1기 (30.5㎡)		1634년 ~1652년	사천목씨 종친회 (도봉구 방학3동 271-2)
목서흙 신도비	"		1기	전체높이 305 ·비 몸돌 : 높이 216, 너비 86.7, 폭 22.8 ·비받침돌 : 높이 50, 너비 168, 폭 88	1671년	
묘 표	"		1기	·비 몸돌 : 높이 128, 너비 51.2, 폭 18.9 ·비받침돌 : 높이 39.1, 너비 81, 폭 52	1689년	
혼유석	"		1기	높이 11, 너비 56, 폭 27.5	17c 후반	
향로석	"		1기	높이 35, 너비 23, 폭 22.5	"	
동자석			2기	(좌) 높이 84, 너비 28.5, 폭 22 (우) 높이 81, 너비 26.5, 폭 23	"	
망주석	"		2기	(좌) 높이 162, (우) 151.5	"	
토지 (묘역과 신도비 점유 부분)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62번지	32,331㎡	204.9㎡			

○ 보호구역 지정대상

지정 예정 지번	지 적	지정 예정면적	소유자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62번지	32,331㎡	597.7㎡	사천목씨 종친회 (도봉구 방학3동 271-2)

○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계획도면 : <별첨1> 참조

○ 공고사유 : 충정공 목서흙의 묘역은 인조 때 한성부 좌우윤을 지냈으며 백성을 위해 교화를 베풀고 청렴했던 목서흙이라는 인물의 묘역으로 서울과의 관련성이 크고, 묘역과 묘역 내 석물

들은 조선 후기 묘제 및 석물 제작 양상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크다. 특히 신도비(神道碑)는 조경(趙綱)의 문장과 이정영(李正英)·조위명(趙威明) 등 당대 명문장가와 명필들의 글씨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 정사(正史)인 실록 등을

보완하는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목서흙의 묘역과 묘역 내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 석물들을 신도비와 함께 일괄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 보존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는 목서흙의 묘역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즉 도봉구 방학동 산62번지의 32,331㎡ 가운데 597.7㎡를 지정하여 동 묘역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관계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2. 기념물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별첨 2> 참조

3.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

○ 문화재로 지정되는 대상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준용규정) 제2항·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6조(수리 등)·제20조(허가사항)·제22조(행정명령) 및 제23조(신고사항) 등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지역

- 충청공 목서흙 묘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46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 상의 '일반묘역'이므로 동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외곽 50m 이내 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지역·지구 등의 신설제한 등)에 의거, 같은 조례 제46조 제2항부터 제4항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됨

4.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① 전화 : (02) 2171-2594

② 팩스 : (02) 2171-2589

③ 우편 : (100-19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 도봉구 문화공보과

① 전화 : (02)2289-1152

② 우편 : (132-70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길 656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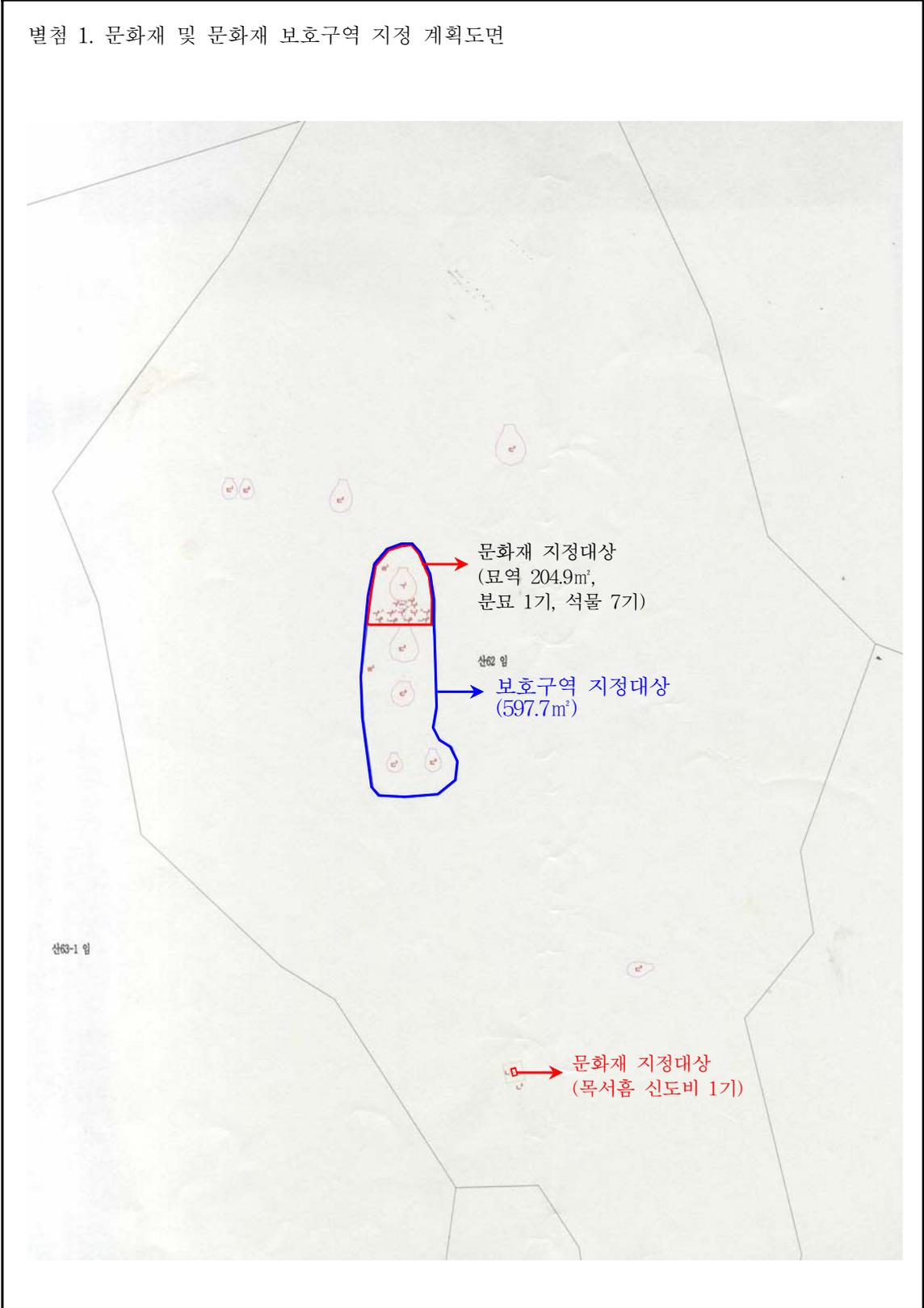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별첨 2>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기념물과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02-2171-2594 / 담당자 : 학예연구사 김수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계획도면



## 별첨 2.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을 위한 조사 보고서

도봉산 시루봉 자락, 오늘날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62번지에는 사천 목씨(泗川 睦氏)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사천 목씨(泗川 睦氏)는 선영이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경기도 양주군 만송리·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등 총 5곳 분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 방학동 묘역이다. 사천 목씨 묘역 가까이에 사적 제362호 <연산군묘>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0호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1. 방학동 사천목씨 묘역 위치도

방학동 사천목씨 묘역에는 묘가 북한 지역에 있는 1대 목효기(睦孝基)부터 6대 목손검(睦孫儉)까지는 단의 형태로 모셔져 있고, 묘역으로는 7대 목진공(睦進恭)의 묘역, 목진공의 6대손인 목서흠(睦叙欽)의 묘역, 그 아들들인 목처선(睦處善)·목지선(睦知善)·목내선(睦來善)의 묘역, 목처선의 아들인 목임기(睦林奇)와 목내선의 아들인 목임일(睦林一)의 묘역, 목임기의 아들인 목천익(睦天翊)과 목임일의 아들인 목천현(睦天顯)의 묘역 등 총 9개소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묘역이 신도비와 함께 있는 <충정공 목서흠 묘역(忠貞公 睦叙欽 墓域)>이다.



그림 2. 사천목씨 묘역의 묘 분포도

목서흠은 선조 때 이조참판(吏曹參判 : 오늘날 행정자치부 차관에 해당)을 지내고 임진왜란 때는 왜적에 대해 의병을 모집하기도 한 목첨(睦詹)의 맏아들로 자(字 : 부모가 아닌 가까운 윗사람이 기호나 덕을 고려하여 붙여주는 이름으로 동년배 이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을 칭할 때 많이 사용함)는 순경(舜卿), 호(號 : 자신의 본명 대신 자신이 거쳐하는 곳이나 지향하는 뜻 혹은 좋아하는 물건 등을 고려하여 만드는 이름)는 매계(梅溪)이다. 1597년(선조 30) 음보(蔭補)로 제용감 참봉(濟用監 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퇴, 1603년 내시교관(內侍 敎官)을 지내고, 북부주부(北部主簿)를 거쳐 1606년 양구현감(楊口 縣監)에 재직하던 중 문묘(文廟) 낙서(落書) 사건으로 파직되었다. 1610년(광해군 2)에는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알성시(謁聖試)에 병과(丙科) 1등으로 급제한 후 10여 년간 관직을 자주 옮겼다. 1623년 인조반정 후에는 함경도선유어사(咸鏡道 宣諭御使)·성균직강(成均 直講)·병조정랑(兵曹 正郎)·사예(司藝) 등에 보하여졌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 인조를 공산(公山)까지 시종하여 행재소(行在所)에서 광주목사(廣州 牧使)에 제수되었다가 곧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해 가을, 왕을 시종한 공로로 비단을 받았다. 이후 병조참의(兵曹 參議)·좌승지(左承旨) 등을 역임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丁卯胡亂) 때는 인조를 남한산성(南漢山城)까지 모시고 가 그 공로로 환도(還都) 이후 우승지(右承旨)가 되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는 동시에 양양부사(襄陽府使)에 제수되었다. 이 때 양양의 수재들을 별도로 수학시키고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했으며 관혼(冠婚)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대주었다. 1628년(인조 6) 유학(幼學) 임지후(任之後)의 반역 고변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대간(臺諫) 이경

석(李景奭)이 차자(筴子)를 올려 심리하게 하자 그해 여름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에 배수되었다. 이 때 학교를 새로이 하고 학륜(學廩 : 장학금의 일종)을 증가시켰다. 또 선죽교(善竹橋)에 정문(旌門)을 세우고, 화담서원(花潭書院 : 서경덕 배향)을 수리하는 한편 충신·효자·열부의 정려(旌閭)로서 무너진 것이 있으면 모두 다 잘 고쳐놓았다고 한다. 1642년(인조 20)에는 봉당(朋黨)의 해로움을 인조에게 상소해 봉당의 폐해를 잘 적시했다는 인조의 칭송을 들었다. 1643년(인조 21)에는 경조(京兆 : 한성부를 지칭함)의 좌·우윤(左·右尹 : 오늘날 서울특별시 부시장에 해당)을 지냈고 1646년에는 예조 참판을 지냈으며 1649년(효종 1)에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1652년(효종 2) 세상을 떠났는데 셋째 아들인 목겸선(睦兼善)이 원종일등공신(原從一等功臣)이 되자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의금부사 세자이사 지경연춘추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 兼 義禁府事 世子貳師 知 經筵春秋館事 五衛都摠府 都摠管)으로 추증(追贈)되었고, 1689년(숙종 15)에 다시 다섯째 아들인 목내선이 좌의정에 오르게 되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675년(숙종 1)에는 충정(忠貞)이라는 시호(諡號 : 왕이나 재상, 저명한 유학자 등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들의 공덕을 기려 나라에서 내려주는 이름)가 내려졌다.

목서흙의 묘역은 목진공의 묘역 바로 위 자좌오향(子坐午向 : 정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목서흙의 부인인 정경부인 안동 권씨가 세상을 떠난 직후인 1634년 최초 조성되었으나 목서흙이 세상을 떠난 1652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 목서흙의 묘표(墓表)가 건립되는 1689년(숙종 15)까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목서흙 묘역 현황





그림 3. 목서흙 신도비 현황

목서흙의 신도비는 묘로부터 동남쪽 방향으로 약 120m 정도 떨어진 묘역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옥개석(비 맨 꼭대기에 있어 비 몸통을 보호하는 한옥 지붕 모양의 돌)·비 몸통·비 받침 등 3부분으로 구성된 이 신도비는 목서흙이 세상을 떠난 1652년 겨울 목서흙의 다섯 아들들의 의뢰로 목서흙과 예조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조경(趙綱)이 비문을 짓고, 비의 제목에 쓸 전액(篆額: 전서체로 쓴 비의 제목)은 전서(篆書: 한자 글씨체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등장한 서체로 획이 가장 복잡하고 곡선이 많음)를 잘 쓰는 것으로 이름난 이정영(李正英)이, 비 몸통 글씨는 조경의 조카로 당대에 이미 명문장가이자 명필로 유명했던 조위명(趙威明)이 썼다. 비문은 조경이 신도비의 비문을 쓰게 된 경위·가계(家系)·역임한 관직들과 주요 활동·성품·후손들의 번창·그의 덕망과 가계의 우수함을 노래한 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문 뒷면 끝 부분에 따르면 이 신도비는 비문 마련 이후 19년이 되도록 돌을 마련하지 못해 세우지 못하다가 목서흙의 손자인 목임형(睦林馨)이 돌을 구하고 목내선이 비문을 새기는 일을 추진하여 1671년(현종 12) 비로소 건립될 수 있었다고 한다.

문인석과 장명등은 후손들에 의해 신규 설치되었다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권고(2009. 3. 12)에 따라 2009. 4. 8 제거되었다.

충정공 목서흙의 묘역은 한성부 좌우윤(오늘날 서울특별시 부시장에 해당)을 지냈으며 백성을 위해 교화를 베풀고 청렴 강직했던 목서흙이라는 조선 후기 인물의 묘역으로 서울과의 관련성이 크고, 묘역과 묘역 내 석물들은 조선 후기 묘제 및 석물 제작 양상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보존가치가 크다. 특히 신도비(神道碑)는 조경(趙綱)의 문장과 이정영(李正英)·조위명(趙威明) 등 당대 명문장가와 명필들의 글씨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 정사(正史)인 실록 등을 보완하는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목서흙의 묘역과 묘역 내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 석물들을 신도비와 함께 일괄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 보존하고자 한다.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는 목서흙의 묘역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즉 도봉구 방학동 산62번지의 32,331㎡ 가운데 597.7㎡를 지정하여 동 묘역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65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가족부및그소속 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 제2009-9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행복한 우리들」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34-1
4. 대표자 : 조 원 집
5. 허가일 : 2009.4.16
6. 설립목적 :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발전 지원을 목적

**■ 변경등록신고**

신 고 인				변 경 내 역			변경일
등록번호	상 호	소재지	대표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668호	주식회사 테일러앤드게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6층	영길김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0-47 조선빌딩 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6층	'09. 4. 6.
제 58호	뉴스킨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7-17	유병석	상호	뉴스킨엔터 프라이즈코리아 주식회사	뉴스킨코리아 주식회사	'09. 4. 1.
제606호	주식회사 하이넷생활건강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4-14 현승빌딩 2층	나상근	전화번호	02-2179-7000	02-566-0075	'09. 3.3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생활경제담당관(☎ 02-3707-8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73호  
신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외국인노동자·새터민 등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부응한 다양한

7. 목적사업

- 각종 재난과 기아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구호 및 개발사업
- 푸드뱅크 운영사업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운영 사업 등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72호  
다단계판매업 변경등록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변경등록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26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인적자본 활용 및 사회참여 촉진으로 사회통합을 구현하고 'Global Top 10 수준의 평생학습도시, 서울'을 달성하고자 「신소외계층 평생교

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  
가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 1.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소외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설 · 운영 예정 자치구(타기관과 공동 · 위탁운영 가능)</li> <li>•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해 등록된 시설 또는 단체</li> <li>•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li> <li>• 서울시교육청 등록 비영리법인</li> <li>• 각급 학교 및 기타 법에 의해 행정기관에 등록된 교육기관</li> <li>※ 신소외계층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노동자 · 새터민 등</li> </ul>
교육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소외계층 사회적응 향상 프로그램 : 한국 및 서울 문화 이해, 한국어 교육 등</li> <li>• 신소외계층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프로그램 : 직업능력 향상 및 다문화 강사 육성 등</li> <li>• 서울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 : 서울의 역사, 현재, 미래 등 시민의식 소양 교육</li> <li>• 기타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창의적 프로그램</li> </ul>
교육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 과정당 4개월 주2회 2시간 강의 기준(학습자 최소 10명 이상)</li> </ul>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71,210천원(14개내외, 평균 5백만원 지원)</li> </ul>

2. 사업 기간 : 2009. 6. ~ 2009. 12.

### 3. 신청 방법

- 가. 사업 개요에 제시된 지원 대상 단체  
등은 각 자치구 평생교육담당 부서로  
신청하며, 해당 자치구에서 취합 ·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에 일괄 접수  
※ 서울특별시에서는 사업 지원 대상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별 접수 받  
지 않음

나. 자치구별 신청 프로그램 건수 : 제한  
없음

### 4. 제출 서류

- ① 공문 1부(담당자명, E-mail, 연락처기  
재) 1부
- ② 공모신청서(소정서식) 1부
- ③ 사업계획서(소정서식) 6부(사본 5부 포  
함)
- ④ 기관 현황(연혁, 활동실적 등) 및 정관  
사본 1부

### 5. 작성 및 제출 방법

- 가. 제출서류는 서울시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평생교육프로그램공모계획 중 소정서  
식으로 작성 · 제출  
나. 사업계획 작성 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는 반드시 소정서식의 파일  
형태(.hwp) 문서로 작성 후 사본 5부  
와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6. 접수 기간 및 장소(반드시 방문접수, 우편 접수 불가)

- 가. 기 간 : 2009. 5. 11(월) ~ 5. 12(화)  
09:00~18: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사업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 서울  
시청 을지로별관 4층)

7. 심사 및 결과 발표
- 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프로그램 및 금액을 심사·결정
- 나. 심사 결과는 해당 자치구로 개별 통보 (2009. 5. 22(금)(예정))
8. 기타 사항
- 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타기관 및 서울시 타부서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행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은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사업 선정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 다.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 선정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해당 자치구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업선정 대상기관은 심사결과에 따른 내용 보완후 사업세부실행계획서 별도 제출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평생교육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09-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432호('63.07.01)로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8-59호(2008.11.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사업시행중인 【명륜2가 224-4~225-9간 도로개설】 구간내 수용대상 토지, 물건, 영업권 조서 내용이 변경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 실시계획고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토목과 (☎731-14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3일  
종 로 구 청 장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명륜2가 224-4~225-9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종로구 명륜2가 224-4~225-9간
- 라. 사업의 규모 : B=6m, L=15m
-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2)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길 50
- 바. 사업기간 : 인가일부터 2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변경인가조서 참조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토목과 (☎731-1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 지 변 경 인 가 조 서

○ 공사명 : 명륜2가 224-4~225-9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종로구청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변경 전										변경 후									
연번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m <sup>2</sup> )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m <sup>2</sup>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종류
1	명륜2가222-2	대	1.0	이동준	종로구혜화동22-56혜화세트빌 101호	근저당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9-1		1	명륜2가222-2	대	1.0	이동준	종로구 혜화동 22-56 혜화세트빌 101호				
2	명륜2가222-3	대	10.9	이동준	종로구혜화동22-56혜화세트빌 102호	근저당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9-1		2	명륜2가222-3	대	10.9	이동준	종로구 혜화동 22-56 혜화세트빌 101호				
3	명륜2가224-4	대	10.4	이동영	성동구행당동 349혜당동한신(아)113-1302	근저당	기업은행	을지로2가36-1		3	명륜2가224-4	대	10.4	이동영	성동구 행당동 349혜당동한신(아)113-1302	근저당	기업은행	을지로2가36-1	
4	명륜2가225-9	대	22.6	전화자	종로구 명륜2가137-2	압류	종로구	세무1과		4	명륜2가225-9	대	22.6	전화자	종로구 명륜2가137-2	압류	종로구	세무1과	
5	명륜2가222-8	대	6.2	장기호 유금석	명륜2가222	근저당	㈜한국상업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111-1(혜화동지점)											
6	명륜2가225-10	대	1.6	전화자	종로구 명륜2가137-2	압류	명륜세마을금고	종로구 명륜동1가 70-1											
7	명륜2가224-1	대	3.4	이동영	성동구행당동 349혜당동한신(아)113-1302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주)한빛은행	중구 을지로2가36-1 중구 회현동1가 203(혜화동지점)											공란
8	명륜2가224-5	대	7.4	이동영	성동구행당동 349혜당동한신(아)113-1303	압류	종로구청	세무2과, 건설관리과											

**물 건 변경 인 가 조 서**

○ 공사명 : 명륜동2가 224-4~225-9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종 로 구 청 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연 번		변 경 전										변 경 후										
연 번	소 제 지	물 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 번	소 제 지	물 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종 류				
1	명륜2가225	건물 (1층)	세멘트리조 / 판넬지붕	21.1	진화자	서울 종로구 명륜2가 137-2	근저당				1	명륜2가225	건물 (1층)	세멘트리조 / 판넬지붕	21.1	진화자	서울 종로구 명륜2가 137-2					
2	명륜2가225	건물 (1층)	세멘트리조 / 판넬지붕	3.1	진화자	서울 종로구 명륜2가 137-2																
3	명륜2가 224-1	건물 (1층)	철근콘크리트 벽돌조/슬래브	23.9		성동구 행당동 349 행당동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 2가 36-1					146		성동구 행당동 349 행당동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36-1			
4		건물 (2층)		23.9	이동영	(아)113-1302	근저당	(주)한빛은행	중구 화현동 1가 208(혜화동지점)		2	명륜2가224 외1필지	건물 (2층)	철근콘크리트 벽돌조/슬래브	146	이동영	성동구 행당동 349 행당동 (아)113-1302	근저당	우리은행	화현동1가 208		
5		건물 (1층)		5.2			근저당	(주)한국상업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혜화동지점)													
6		건물 (2층)		6.4																		
7	명륜2가222	건물 (3층)	철근콘크리트 벽돌조/슬래브	6.4	장기홍 부대표	명륜2가222	근저당															
8		건물 (4층)		0.2																		
9		추녀 (4층)		1.2																		

### 영 업 권 변 경 인 가 조 서

○ 공사명 : 명륜2가 224-4~225-9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종 로 구 청 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제 지	영업의종 류	상호명	수량	성 명	주 소	소 유 자	연번	소 제 지	영업의 종 류	상호명	수량	성 명	주 소
1	종로구 명륜2가 225(1층)	문구점	길드문구	1	이은석	명륜3가 105-1	명륜3가 105-1	1	종로구 명륜2가 225(1층)	문구점	길드문구	1	이은석	명륜3가 105-1	
2	종로구 명륜2가 225(1층)	식 당	단골식당	1	기추자	명륜3가 108-3	명륜3가 108-3	2	종로구 명륜2가 225(1층)	식 당	단골식당	1	기추자	명륜3가 108-3	
3	종로구 명륜2가 225(1층)	약세사리점	꽃향유	1	이지형	명륜2가 225	명륜2가 225	공 란							
4	종로구 명륜2가 224-1(1~2층)	분식점	부산오뎅	1	김진숙	명륜2가 224	명륜2가 224	3	종로구 명륜2가 224-1(1~2층)	분식점	부산오뎅	1	김진숙	명륜2가 224	
5	종로구 명륜2가 222(1층)	게임제공업	에이스게임광장	1	이순원	명륜2가 222 (1층)	명륜2가 222 (1층)	공 란							
6	종로구 명륜2가 222(2층)	PC방	큐비존	1	강미진	명륜2가 222 (2층)	명륜2가 222 (2층)								
7	종로구 명륜2가 222(3~4층)	고시원	명륜고시원	1	최태관	명륜2가 222 (3층)	명륜2가 222 (3층)								

**◆ 성동구고시 제2009-20호  
금호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34(2004. 7. 15)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05. 1. 8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되어 성동구고시 제2005-60(2005. 9. 7)호 및 성동구고시 제2006-8(2006. 2. 27)호로 구역 변경지정 되었으며, 성동구고시 제2006-36(2006.6.26)호로 인가된 금호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하였으므로,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주택과(전화 : 2286-5593)와 금호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전화 : 2298-285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3일  
성 동 구 청 장

- 가. 사업명칭 : 금호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4가 235번지 일대
- 다. 구역면적 : 33,291.00㎡
- 라. 사업시행자 : 금호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 이 민 주
- 마. 주된사무소 소재지 : 성동구 금호동4가 503번지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지정	금호제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성동구 금호동1가 280번지일대	66,571.8	감)18.3	66,553.5	- 측량(지번분할) 등에 의한 면적 변동

바.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51개월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아. 주요변경 내용

- 주 용 도 : 아파트 11개동→12개동, 세대수증가(705→707세대)
- 상가 및 아파트 위치변경
- 세입자 대책 변경 : 임대↔주거이전비(각10건) 및 명의변경
-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 공원(1,681.90㎡), 녹지(647.00㎡), 도로(2,119.50㎡) 등은 설치 후 무상귀속.
- 차. 최고높이 : 45.60m
- 카. 관계도서 :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 성동구고시 제2009-22호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48호(2006.10.19)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성동구 고시 제2007-74호(2007.9.2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성 동 구 청 장

1.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m <sup>2</sup> )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66,571.8	감)18.3	66,553.5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66,571.8	감)18.3	66,553.5	100.0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라.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m <sup>2</sup> )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66,571.8	감)18.3	66,553.5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11,502.6	증)30	11,532.6	17.33	
	도로	2,833.0	증)30	2,863.0	4.30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동
	어린이공원	3,359.6	-	3,359.6	5.05	
	학교	5,310.0	-	5,310.0	7.98	
택 지	소계	55,069.2	감)48.3	55,020.9	82.67	
	택지1	50,766.3	감)58.3	50,708.0	76.19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동
	택지2	2,350.0	-	2,350.0	3.53	
	택지3	827.0	증)10.0	837.0	1.26	착오기재로 면적정정 변동
	택지4	760.9	-	760.9	1.14	
	택지5	365.0	-	365.0	0.55	

마.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 2)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등)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 4)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바.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m <sup>2</sup> )	명칭	면적 (m <sup>2</sup>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금호제1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66,571.8	-	-	성동구 금호동1가 280번지 일대	423	2	-	2	419	
변경	금호제1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66,553.5	-	-	성동구 금호동1가 280번지 일대	423	2	-	2	419	

※ 존치는 종교시설 2동임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금호제1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6,571.8	택지1	50,766.3	금호1가 184-5일대	183,488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23.55 이하	최고 21층 이하
			택지2	2,350.0	금호1가 598-10일대	9,868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23.55 이하	최고21층 이하
택지3			827.0	금호1가 266일대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건폐율· 용적률·높이 적용					
택지4			760.9	금호1가 561일대						
택지5			365.0	금호1가 444-7일대						
변경	금호제1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6,553.5 (감18.3)	택지1	50,708.0 (감 58.3)	금호1가 184-5일대	183,488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23.66 이하 (증 0.11)	최고21층 이하
택지2			2,350.0	금호1가 598-10일대	9,868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23.66 이하 (증 0.11)	최고21층 이하	
변경			택지3	837.0 (증 10.0)	금호1가 266일대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건폐율· 용적률·높이 적용				
기정			택지4	760.9	금호1가 561일대					
			택지5	365.0	금호1가 444-7일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설비율 : 총 건설 세대수의 80%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법령에 의함							
사.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증)4세대  
 - 기존 세대수 1,119세대 → 계획 세대수 1,123세대

2.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주택과(☎ 2286-560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성동구고시 제2009-23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137호(2005.5.12)

호 결정고시된 우리구 성수동 KT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사업지구 확정측량 결과면적이 변경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동법 제 3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성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성수동 KT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성수동2가 333-1 일대	39,495.0	감)813.1	38,681.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준공업지역	39,495.0	감)813.1	38,681.9	100.00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계	39,495.0	감)813.1	38,681.9	100.00	

나.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

가.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획지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성동구 성수동2가 333-1	25,824.0	감) 477.1	25,346.9	84.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②	성동구 성수동2가 333-1	4,612.0	감) 84.1	4,527.9	15.2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계		30,436.0	감) 561.2	29,874.8	100.00	-

- [5] 건축물의 용도 및 배치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6]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7]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개발과(☎2286-556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광진구고시 제2009-26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47(2007.5.25)호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구의동 19-9외 4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광진구청장

1. 변경결정취지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공공공지)에 대해 건축심의결과 및 표기착오에 의한 선형변경(정정)으로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변경결정.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동 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19-9외 4필지	3,760.6	-	3,760.6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변경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3,760.6	-	3,760.6	100%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공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선형 변경(정정)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광진구 구의동 19-9외 4필지	526.89	-	526.89	기부채납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서 참조 : 생략
  - 생략된 조서 및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 4.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과(☎450-765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동대문구고시 제2009-30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시 제2006-83호(2006.9.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이 승인되어, 구고시 제2006-134호('06.12.28)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하고, 구고시 제2007-22호('07.4.12) 및 제2008-90호('08.12.4)로 변경인가한 『답십리동 488~967간 외 1개소 도로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09년 4월 23일  
동 대 문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8-230~488-25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8-71~488-102간
-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다. 사 업 명 : 답십리동 488~967간 외1개소 도로개설
- 라. 사업의규모 : 도로개설 B=6m, L=104m/ B=6m, L=135m

-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 바.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 인가일 ~ 2009.12.27
-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토목과(2127-4829), 주택과(2127-4669)로 문의 바랍니다.

## 물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호
- 사업의 종류 : 답십리동 488~967간 외1개소 도로개설공사

연번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규격및 구조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권리명세		
		1 ~ 20번	“변경사항 없음”									
30	당초	488-77	주택	세멘조	1.1	김용덕	답십리동 488-78					무허가
	변경	488-78	주택	세멘조	1.1	김용덕	답십리동 488-78					유허가
		31번	“변경사항 없음”									
32	당초	답십리동 488-85	창고	세멘조	0.3	전광일	답십리동 489-115					무허가
			창고	세멘조	0.3	전광일	답십리동 488-85					무허가
	변경	담장	블럭	1식	전광일							
		대문	철제	1식								
		33 ~ 37번	“변경사항 없음”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호
- 사업의 종류 : 담십리동 488~967간 외1개소 도로개설공사  
⇒ 변경사항 없음

**◆ 강북구고시 제2009-24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5호(2009.02.10)호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강북구 공고 2009-207호(2009.03.2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강북구 미아동 147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운정캠퍼스) 신축사업을 시행코자,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며, 송달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 2) 명 칭 : 성신여자대학교(운정캠퍼스) 신축공사

나.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47번지 외 9필지

다. 사업 시행자

- 1)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73-1번지
- 2) 성 명 :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김순옥

라.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1. 4. 30

마.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사업시행면적

구 분	시설결정면적(m <sup>2</sup> )	사업시행면적(m <sup>2</sup> )	비 고
성신여자대학교 (교육연구시설)	25,741.5	25,741.5	시설결정 고시근거 서고시 제2009-55(09.02.12)호

2) 건축면적 및 연면적

구 분	건축면적(m <sup>2</sup> )		건폐율(%)		연면적(m <sup>2</sup> )		용적률(%)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신여자대학교	6,875.00	6,935.06	26.71	26.94	52,559.37	66,239.51	132.25	150.97	운정관 외 1동
증 · 감	(증) 60.06		(증) 0.23		(증) 13,680.14		(증) 18.72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디자인건축과(전화 901-6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고시 제2009-1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사적제440호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토지보상)실시계획인가**

1. 문화재청고시제2002-14호(2002.3.9)로 문

화재 지정 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 제 2008-160호(2008.12.10)호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제2009-212호(2009.3.20)로 열람공고 완료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47-1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내 사유지 토

지보상)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저축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청 문화과(☎950-3412)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3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종류 및 명칭 :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보호구역내 사유지 토지 보상

나. 사업규모

(1)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47-1번지

(2) 면 적 : 27,706㎡

(3) 내 용 : 토지보상

다.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0. 12. 30.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 별첨

바. 고시방법 : 시보게재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의종류와 내용	
						은영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08-142				
						유창수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12-402				
						유세준	서초구 방배동892-10, 202호				
1	월계동 산47-1	임야	27,706	27,706		류창수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12-402				
						류창수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12-402				
						김정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9 밀레니엄리젠시206호	도봉신용 협동조합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19-10	근저당설정	

◆ **은평구고시 제2009-20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25호(1984.06.0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609호(1984.10.17)로 지적승인된 “응암동242-238~242-240”간 도시계획시설(도로)와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를 매수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토목과 (☎350-3527)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3일  
은 평 구 청 장

##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규 모	사업기간	결정고시일	비고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응암동242-238~242-240간 도로개설사업	응암동 241-65	337㎡	인가일로부터 2년	서울특별시고시 제325호 (1984.06.04)	매수청구 토지 보상

##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2)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지번·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 조서 참조

라.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 조서 참조

마.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에 의함

바.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토목과

사.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아. 기타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토목과(02-350-3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 지 조 서

사업명 : 응암동 242-238 ~ 242-240간 도시계획사업(도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실제 이용 상황	면적 면적 (㎡)	소유자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응암동	241-65	대	337	도로	337	1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88-2	김형인					

◆ 서대문구고시 제2009-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 작성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5-22호(2005. 2.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9-185호(2009.3.12.)로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우리구 홍은2동 190-2 ~ 189-2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가. 사업개요

-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3일  
서대문구청장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규 모	사업기간	비 고 (결정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홍은2동 190-2 ~ 189-2간 도로개설공사	시점 : 홍은2동 190-14 종점 : 홍은2동 189-24	B = 8m L = 40m	고시일로부터 2년간	서대문구고시 제2005-22호 (2005.2.17)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 조서 참조]  
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따로붙임 조서 참조]  
마. 기타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토목과(공사:☎330-1762) 및 건설관리과(보상:☎330-1401 ~ 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흥은2동 190-2 ~ 189-2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 번	지 목	면적 (㎡)	수용면적 (㎡)	소유자 성 명	소 유 자 소	이해관계인 성 명	이 해 관 계 인 소	비 고 (모자면)
1	흥은동 191-280	구거	739	739	서대문구				191-166

**물 건 조 서**

○ 사업명 : 홍은2동 190-2 ~ 189-2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면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용면적 (㎡)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이해관계인 성명	이해관계인 주소	비고
1	홍은2동 189-24	담장			1식	홍계석	서대문구 홍은동 48-142			
		대문			3식			주식회사 대원제지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336	
2	홍은2동 189-28	담장			1식	장영숙	서대문구 홍은동 189-28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포천지점)	
		수목			3식					
3	홍은2동 190-2	가건물		7.8	2.3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홍제동지점)	
		화장실		2.4	2.4	윤승철	서대문구 홍은동 190-2	남양유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8	
		담장			1식					
4	홍은2동 190-1	담장			1식	김창수	서대문구 홍은동 455 벽산(아) 105동 503호			
		화단			1식					

**홍은2동 190-2 ~ 189-2간 도로개설공사**



**◆ 서대문구고시 제2009-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1-82호 (2001.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8-99호(2008.12.18)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09-169호(2009.3.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

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3일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규모	사업기간	비고 (결정고시일)
홍제3동 273-1 도로확장공사	홍제3동 273-1	B=6m→7m L=10m	고시일로부터 2년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1-82호 (2001.1.18)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 조서 참조]
- 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따로붙임 조서 참조]
- 마. 기타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토목과(공사: ☎330-1761) 및 건설관리과(보상: ☎330-14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홍제3동 273-1 도로확장사업

연번	지 번	지 목	면적(m <sup>2</sup> )	수용면적(m <sup>2</sup>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비 고 (모자면)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홍제동273-256	대	3	3	김성창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273-1				273-1
					염수삼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273-1	신한은행(홍제동지점)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처당권	
					염승삼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6-53 예광빌라 비01호				

**◆ 강서구고시 제2009-2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강 서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도로확장으로 인한 토지 분할로 인하여 자투리땅으로 남게되어 그 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농작물 경작 등에 따른 주변경관저해 등의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	방화동 127	-	89	89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15-7595) 및 구로구 푸른도시과(☎02)860-2396)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3일  
구 로 구 청 장

**◆ 구로구고시 제2009-30호  
도시계획시설(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11호(1999.1.1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1999-3호(1999.2.5)로 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46호(2009.04. 0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구로구 온수동 산4-2번지 일대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 가. 도시계획시설(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계획(변경)결정 총괄 및 시설 조서 : 따로붙임
- 나. 도시계획시설(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계획(변경)결정 지형승인도면 : 게재생략
-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15-7595) 및 구로구 푸른도시과(☎02)860-2396)에 비치된 도면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총괄조서(위치 : 구로구 온수동 산 4-2번지 일대)

구분	변 경 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동)	바닥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연면적(㎡)
합계	37,454	7,137	61	61	37,454	6,974	51	51	17	감 153㎡	
기 반 시 설	소 계	2,205			1,366	1,366					감 839㎡
	도로	1,126			1,366	1,366					증 240㎡
	광장	1,079									감 1,079㎡
조경시설	1,248	1,248			1,525	1,525			11	증 277㎡	
휴양시설	1,680	1,680		61	1,578	1,578			2	감 102㎡	
유희시설	1,146	1,146			806	806			4	감 340㎡	
운동시설	578	578			1,336	1,336				증 758㎡	
교양시설	280	280			282	282				증 2㎡	
관리시설					81	81		51		증 81㎡	
녹지·기타	30,317				30,480					증 163㎡	
시 설 율	7,137 ÷ 37,454 × 100 = 19.05% (법정 40% 이하)										
건 계 율	61 ÷ 37,454 × 100 = 0.16% (법정 10% 이하)										
	6,974 ÷ 37,454 × 100 = 18.62% (법정 40% 이하)										
	51 ÷ 37,454 × 100 = 0.13% (법정 10% 이하)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휴양 시설	소 계			1,680	1,680			61	61	1		1,578	1,578						2	감102
	휴게소	다		(1,535)	(1,535)							1,578	1,578							층43
		다-1		(647)	(647)							(634)	(634)							감13
		다-2		(226)	(226)							(103)	(103)							감123
노인정	소 계	1		145	145	1동	1동	61	61											층33
	팔각정	④				목재				1				목재					1	신설,층146
	없음벽																		1	폐지,감145
	소 계	라		1,146	1,146					4		806	806						4	2층,진망대
유취 시설	어린이놀이터	라		1,146	1,146					4		806	806						4	신설
		라-1		(806)	(806)					(2)		(806)	(806)						(4)	감340
		라-2		(340)	(340)					(2)		(806)	(806)							감340
	소 계			578	578							1,336	1,336							폐지,감540
운동 시설	베드민턴장	마		252	252							372	372							층78
	체력단련장	바		326	326							528	528							층120
		바-1		(170)	(170)							(181)	(181)							층202
		바-2		(156)	(156)							(114)	(114)							감11
교양 시설	다목적운동장											(233)	(233)							감42
	소 계	사		280	280					2		436	436							신설,층233
	자연학습원	사		280	280							282	282							신설,층436
	소계											282	282							층2
관리 시설	관리창고 및 화장실									2		81	81				51	51		층81
	소 계			30,317							81	81				51	51			신설,층81
	녹지			30,317								30,480								층163
	녹지			30,317								30,480								층163

##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합 계				495 911	1,126 1,366				
당초 변경	산 책 로		44-1	12 2	48 19	산책로 38	진입부 산책로	휴게소(다-1) 휴게소(다-4)	체력단련장(바-3)	감10
폐지			4-2	3	53	159	산책로	광장(가-4)	진입부	감159
폐지			4-3	3	7	21	산책로	진입부	휴게소(다-4)	감21
당초 변경			4-4	3 1.5	48 77	144 115	산책로 산책로	광장(가-4) 휴게소(다-3)	산책로(4-10) 산책로(4-6)	감29
폐지			4-5	2.5	8	20	산책로	휴게소(다-4)	산책로(4-2)	감20
당초 변경			4-6	2 1.5	33 50	66 75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4-2) 산책로(4-8)	휴게소(다-5) 산책로(4-7)	증9
당초 변경			4-7	2 1.5	85 85	170 127	산책로 산책로	광장(가-4) 산책로(4-6)	광장(가-3) 진입부	감43
당초 변경			4-8	2 1.5	82 127	164 190	산책로 산책로	광장(가-2) 체력단련장(바-2)	휴게소(다-2) 산책로(4-6)	증26
당초 변경			4-9	2 1.5	62 76	124 114	산책로 산책로	휴게소(다-2) 휴게소(다-1)	산책로(4-8) 산책로(4-11)	감10
당초 변경			4-10	2 1.5	105 196	210 294	산책로 산책로	광장(가-4) 산책로(4-9)	배드민턴장(마) 산책로(4-6)	증84
신설			4-11	1.5	123	184	산책로	자연학습원(사)	산책로(4-9)	증184
신설			4-12	1.5	133	199	산책로	휴게소(다-4)	휴게소(다-2)	증199
신설			4-13	1.2	25	30	산책로	자연학습원(사)	자연학습원(사)	증30

◆ 구로구고시 제2009-31호  
갈매소공원 조성계획결정

02-860-2321, 2395~7)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9호(2005.12. 29.)로 도시관리계획(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2호(2008.7.3)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구로구고시 제2008-55호(2008.8.2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9-13호(2009.2.20)로 지형도면(변경)승인되고,
2. 구로구공고 제2008-686호(2008.11.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142번지 일대 갈매소공원에 대하여,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구 로 구 청 장

- 가. 결정 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온수동 142번지 일대 갈매소공원 조성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온수동 142번지
- 다. 면 적 : 3,200㎡
- 라. 갈매소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 별첨  
갈매소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의거 지형도면작성·승인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함
- 바. 열람장소 : 구로구청 푸른도시과☎

## 갈매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 1. 총괄표 (위치 : 구로구 온수동 142번지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고	
			동수 (동)	시설면적 (㎡)	시설면적 (㎡)			
계	3,200.00	637.92				47	시설율 19.94%	
기 반 시 설	소계	283.63	283.63				-	
	도로	283.63	283.63				-	
조경시설	250.76	250.76				6		
휴양시설	71.00	71.00				7		
유희시설	-	-				-		
운동시설	32.53	32.53				8		
교양시설	-	-				-		
편익시설	-	-				-		
관리시설	-	-				26		
녹지 및 기타	2,574.78						녹지율 80.06%	

##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3,200.00	637.92					47	
기반 시설	소계			283.63	283.63					-	
	도로		부지내	283.63	283.63					-	
조경 시설	소계			250.76	250.76					6	
	수경시설	①	부지내	134.13	134.13					1	
	화 계	②	부지내	21.18	21.18					1	
	목재데크	③	부지내	26.41	26.41					1	
	계 단	④	부지내	9.90	9.90					1	
	램 프	⑤	부지내	57.70	57.70					1	
휴양 시설	수목보호틀	⑥	부지내	1.44	1.44					1	
	소계			71.00	71.00					7	
	휴게공간	가	부지내	32.00	32.00						
	팔각정자	⑦	부지내	39.00	39.00					1	
등 의 자		부지내	(4.98)	(4.98)					6		
운동 시설	소계			62.26	62.26					8	
	체력단련장	나	부지내	32.53	32.53					-	
	스텝사이클	⑧	체력단련장내	-	-					1	
	크로스컨트리	⑨	체력단련장내	-	-					1	
	스트레칭로라	⑩	체력단련장내	-	-					1	
	스텝사이클	⑪	체력단련장내	-	-					1	
	체어웨이트	⑫	체력단련장내	-	-					1	
	핸들웨이트	⑬	체력단련장내	-	-					1	
	트윈트위스트	⑭	체력단련장내	-	-					1	
야외용체중계	⑮	체력단련장내	-	-					1		
관리 시설	소계			-	-					24	
	공 원 등	⑯	부지내	-	-					11	
	투 사 등	⑰	부지내	-	-					11	
	볼 라 드	⑱	부지내	-	-					1	
	웬 스	⑲	부지내	-	-					1	252.45m
녹지 및 기타	다	부지내	2,562.08	-					-		

##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283.63	보행로 진입로			
신설	소로	3류	1	1.5	33.29	59.24	진입로	부진입로	휴게소	
	소로	3류	2	1.5	5.68	9.12	진입로	휴게소	공원외부	
	소로	3류	3	2.0	40.33	81.47	순환로	소로3-1	휴게소	순환로
	소로	3류	4	1.5	62.79	94.77	순환로	소로3-1	휴게소	순환로
	소로	3류	5	1.5-2.0	13.11	23.62	진입로	부진입로	소로3-4	
	소로	3류	6	1.5	5.43	15.41	진입로	주진입로	소로3-3	
소계						283.63				

◆ 구로구고시 제2009-32호  
와룡소공원 조성계획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9호(2005.12.29.)로 도시관리계획(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2호(2008.7.3)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구로구고시 제2008-55호(2008.8.2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9-13호(2009.2.20)로 지형도면(변경)승인되고,
2. 구로구공고 제2008-686호(2008.11.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129번지 일대 와룡소공원에 대하여,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 가. 결정 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온수동 129번지 일대 와룡소공원 조성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온수동 129번지
- 다. 면 적 : 2,500m<sup>2</sup>
- 라. 와룡소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 별첨  
와룡소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 열람 장소에 비치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의거 지형도면작성·승인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함
- 바. 열람장소 : 구로구청 푸른도시과(☎ 02-860-2321, 2395~7)

2009년 4월 23일  
구 로 구 청 장

## 와룡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 1. 총괄표 (위치 : 구로구 운수동 129번지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고
			동수 (동)	시설면적 (㎡)	시설면적 (㎡)		
계	2,500.30	440.71				48	시설율 17.63 %
기 반 시 설	소계	357.38	357.38			-	
	광장	82.65	82.65			-	
	도로	274.73	274.73			-	
조경시설	22.27	22.27				8	
휴양시설	23.05	23.05				7	
유희시설	-	-				-	
운동시설	38.01	38.01				4	
교양시설	-	-				-	
편익시설	-	-				-	
관리시설	-	-				29	
녹지 및 기타	2,059.59						

## 2. 시설조사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 적		
계				2,500.30	440.71					48	
기반 시설	소계			357.38	357.38					-	
	도로		부지내	274.73	274.73					-	
	진입광장	가	부지내	45.66	45.66					-	
	중앙광장	나	부지내	36.99	36.99					-	
조경 시설	소계			22.27	22.27					8	
	계 단	①	부지내	6.27	6.27					1	
	장미아치	②	부지내	(22.02)	(22.02)					6	
	목재데크	③	부지내	16.00	16.00					1	
휴양 시설	소계			23.05	23.05					7	
	팔각정자	④	부지내	23.05	23.05					1	
	등의자	⑤	부지내	(4.98)	(4.98)					6	
운동 시설	소계			38.01	38.01					4	
	체력단련장	다	부지내	38.01	38.01					-	
	스텝사이클	⑥	체력단련장내	-	-					1	
	크로스컨트리	⑦	체력단련장내	-	-					1	
	스트레칭로라	⑧	체력단련장내	-	-					1	
	폴웨이트	⑨	체력단련장내	-	-					1	
관리 시설	소계			-	-					29	
	공원등	⑩	부지내	-	-					13	
	투사등	⑪	부지내	-	-					8	
	블라드	⑫	부지내	-	-					7	
	웬스	⑬	부지내	-	-					1	188.27 m
녹지 및 기타	라	부지내	2,059.59								

##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274.73	진입로 보행로			
신설	소로	3류	1	2.0~3.0	60.56	132.58	보행로	진입광장	진입광장	
	소로	3류	2	1.5	18.77	28.16	보행로	소로3-1	소로3-3	
	소로	3류	3	1.5	15.61	23.42	부진입로	부진입로	중앙광장	
	소로	3류	4	1.5	45.32	67.98	보행로	소로3-3	중앙광장	
	소로	3류	5	1.5	15.06	22.59	부진입로	부진입로	중앙광장	
소계						274.73				

◆ 구로구고시 제2009-34호  
무궁화소공원 조성계획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2호(2006.9.2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양천구고시 제2007-31호(2007.7.26.)로 변경 결정되어, 지형도면승인 되고
2. 구로구공고 제2008-662호(2008.11.1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7-108번지 일대 무궁화소공원에 대하여,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구로구청장

가. 결정 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고척동 57-108번지 일대 무궁화소공원 조성 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7-108번지 일대

다. 면 적 : 1,166m<sup>2</sup>

라. 무궁화소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 별첨, 열람장소에 비치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의거 지형도면작성·승인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함

바. 열람장소 : 구로구청 푸른도시과 ☎ 02-860-3084, 2395~7)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최초결정)**

1. 총괄표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57-108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166.00	229.24				17	시설율19.66%
기 반 시 설	소계	229.24	229.24				
	도로	84.86	84.86				
	광장	144.38	144.38				
휴양시설	-	-				11	
관리시설	-	-				3	
운동시설	-	-				3	
녹지·기타	936.76						부지면적의 80.34%

## 2. 시설조서(최초결정)

구분	시 설 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1,166.00	229.25					17	
기본 시설	소계			229.25	229.25						
	광 장	가	고척동 57-108	118.05	118.05						
	도 로		고척동 49-31	79.42	79.42						
			고척동 57-108	2.63	2.63						
			고척동 57-108	29.15	29.15						
휴양 시설	소계									11	
	반원형 파고라	①	고척동 57-108							2	
	통석의자	②	고척동 57-108							7	
	앉음벽	③	고척동 57-108							2	
운동 시설	소계									3	
	체력단련 시설	④	고척동 57-108							3	
관리 시설	소계									3	
	목책	⑤	고척동 57-108							2	
	공원 명패석	⑥	고척동 57-108							1	
녹지	소계			936.75							
	녹지			936.75							

##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36.36	111.20				
신설	소로	3류	3-1	4.0	19.85	79.42	진입로	소로 3-3	서북측로	
		"	3-2	1.0	2.63	2.63	진입로	동측	소로 3-1	
		"	3-3	2.1	13.88	29.15	진입로	광장동측	소로 3-1	

**◆ 동작구고시 제2009-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54호(1973.4.25)로 도시 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된 “사당 동 218-1~220-9(산36~산31-7)간 등 2개 소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같은법 제13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인가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인 동작구청 토목과 (☎820-9907)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물건, 영업권)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당동 218-1~220-9간, 사당동 208-6~209-7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 다. 사 업 명 : 사당동 218-1~220-9(산36~산31-7)간 등 2개소 도로개설공사
- 라. 면적 또는 규모 : B=6m, L=190m
- 마.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동작구청장 (동작구 장승배기길 16)
-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관한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함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노량진동 47-2)
- 사업의 종류 : 사당동 218-1~220-9(산36~산31-7)간 등 2개소 도로 개설공사

토 지 조 서

연번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	이해 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사당동 208-1	대지	3	3	이 형	광진구 광장동 332-9 극동빌라 다동 102호					
					정진영	마포구공덕동 113-15 2층 1호					
					박선우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 아파트412동 1604호					
					정운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88 강촌마을 206동 1702호					
					정화영	구로구 구로동 392-27					
2	사당동 219-14	도로	469	469중 2/90	정보영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 아파트 404동 504호					
					정진규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12번지					
					유신목 (사망필소자)	마포구 합정동 371-9 202호	압류	마포구 (세무1과)			
					유병기	송파구 송파동 37-14 삼성세르빌 B동 402호	압류	동작구 (세무1과)			
					유병규	서초구 반포동1-8 경남아파트 11동 601호	가압류	한국자산관리 공사	강남구 역삼동 814 (위탁채권관리부)		

연번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	판 입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소 유 권 이 외 권 리 의 명 세	성 명	주 소		
2	사당동 219-14	도로	469	469중 2/90	유정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18동 604호	압류	동작구 (세무1과)			
					정진석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채리 12					
					정진희	강남구 청담동 10 정림아파트 B동 509호					
					정진인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23 금호 타운 107동 1102호					
3	사당동 220-111	대지	83	469중 1/10	정진민	영등포구 신길동 480 이.엘.샬레 아파트 702호					
					정진자	양천구 목동 901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29동 1404호					
					정진열	양천구 목동 905-22 목동트윈빌 D동1209호					
					김영배	강남구 신사동 산9-8					
4	사당동 208-10	대지	118	1	유영자	동작구 사당동 208-10	압류	동작구 (세무1과)		사당4동 267-5	
											근저당권
5	사당동 220-113	도로	46	46중 1/10	정진영	마포구 공덕동113-15 2층 1호					
					박신우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 트412동 1604호					
					정운영	경기도 공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83 강촌마을 206동 1702호					

연번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	판 입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소 유 권 이 외 권 리 의 명 세	성 명	주 소	
5	사 당 동 220-113	도 로	46	46중 2/90	정화영	구로구 구로동 392-27				
				46중 2/90	정보영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래스타파 트404동 504호				
				46중 1/10	정진규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12번지				
				46중 3/90	유선목 (사망발소자)	마포구 합정동 371-9 202호	가압류	한국자산관리 공사	강남구 역삼동 814 (위탁채권관리부)	
				46중 2/90	유병기	송파구 송파동 37-14 삼성쉐르빌 B동 402호				
				46중 2/90	유병규	서초구 반포동1-8 경남아파트 11동 601호				
				46중 2/90	유정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18동 604호				
				46중 1/10	정진석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12				
				46중 1/10	정진희	강남구 청담동 10 정림아파트 B동 509호				
				46중 1/10	정진인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23 금호 타운 107동 1102호				
				46중 1/10	정진민	영등포구 신길동 480 이엘샤틀레 아파트 702호				
				46중 1/10	정진자	양천구 목동 901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29동 1404호				
				46중 1/10	정진열	양천구 목동 905-22 목동트윈빌 D동1209호				

물 건 조 서

연번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사항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자의 권리의 명세	성명	주소	
1	사당동 209-7	지층	시멘트 벽돌조	9㎡	주택	우상록	동작구 사당동 209-7				
		1층	시멘트 벽돌조	9㎡	근린						
		2층	시멘트 벽돌조	9㎡	주택						
		보일러실	시멘트 벽돌조	2㎡	보일러실						
2	사당동 208-10	1층	시멘트 벽돌조	1㎡	근린	유영자	동작구 사당동 208-10	압류	동작구 (세무1과)	사당새마을 금고	사당4동 267-5
		2층	시멘트 벽돌조	2㎡	주택						
3	사당동 208-6	1층	시멘트 벽돌조	4㎡	점포	이준영	종포구 효제동 173-9				
4	사당동 219-25	대문	철재	1식	대문	김옥임	동작구 사당동 219-25				
		담장	벽돌	1식	담장						
		쪽문	철재	1식	쪽문						

연번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	성명	주소	
5	사당동 219	기둥	벽돌	1식	담장기둥	김분자	사당동 219번지 진영빌라101호				
						노미숙	사당동 219번지 진영빌라102호				
						최순녀	사당동 219번지 진영빌라201호				
						박성표	사당동 219번지 진영빌라202호				
						권정순	강남구 신사동 551-5 401호				
						이옥영	사당동 219번지 진영빌라302호				
						김태동	영등포구 영등포동647 영등포 푸르지오 108동 1901호				
						강조욱	사당동 219번지 진영빌라B02호				

### 영 업 권 조 서

연번	지 번	물건의 종류	상 호	수 량	영업권의 종 류	소 유 자	
						성명	주 소
1	사당동 208-10	영업권	서울식당	1식	음식업	이인숙	사당동 208-10
2	사당동 208-6	영업권	유하인쇄	1식	인쇄업	이창열	사당동 208-6

◆ 관악구고시 제2009-24호

신림7-1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1.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180호(1999.6.21)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되고,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2-32호(2002.6.11)로 개선 계획수립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2-61호(2002.11.30) 개선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6-80호(2006.11.30) 정정(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7-25호(2007.7.12) 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8-30호(2008.6.12) 정비계획 변경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9-18호(2009.3.13)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신림7-1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하여 2009.4. 20. 준공인가 됨에 따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관 악 구 청 장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의 명칭 : 신림7-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시행구역의 위치 : 관악구 난향동 산94번지 일대  
(예정지번 난향동 1738호외 2필지)
  - 시행구역의 면적 : 3994.3 m<sup>2</sup> (확정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 로알파로스(주) 대표이사 장옥란  
하이파로스(주) 대표이사 서성준
  - 사업시행자의 주소 : 관악구 신림13동 692-7호 1층 105호

준공인가 내역

○ 난향동(신림7동) 1738호 A동

대지면적(m <sup>2</sup> )	2,008.4	건축면적(m <sup>2</sup> )	1,185.64
건 폐 율(%)	59.03	연 면 적(m <sup>2</sup> )	7,059.78
용적률 산정용 연 면 적(m <sup>2</sup> )	3,892.22	용 적 률(%)	193.8
층 수	지하2층/지상7층	호수/가구수	19세대
주 용 도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주 구 조	철근콘크리트

○ 난향동(신림7동) 1738-1호 B동

대지면적(m <sup>2</sup> )	1,779.8	건축면적(m <sup>2</sup> )	890.43
건 폐 율(%)	50.03	연 면 적(m <sup>2</sup> )	6,458.64
용적률 산정용 연 면 적(m <sup>2</sup> )	3,558.11	용 적 률(%)	199.92
층 수	지하2층/지상7층	호수/가구수	19세대
주 용 도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주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송파구고시 제2009-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지하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07-27호(2007. 5.10)로 결정된 송파구 잠실동 35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송 파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송파구 잠실동 35번지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지하도로)
  - 명 칭 : 지하도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 규모
  - 면 적 : 96.4m<sup>2</sup>
  - 폭 : 6.0~10.7m
  - 연 장 : 11.6m
  - 높 이 : 5m
4. 사업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성 명 : 조합장 신현화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인가일로부터 ~ 2007.08.31.
  - 변 경 : 인가일로부터 ~ 2009.04.30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410-313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09-371호  
도시계획사업(철도)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1. 광진구 고시 제2009-269호(2009.03.26)로 도시계획사업(철도) 실시계획 열람공고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0-1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행정과(☎450-791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3일  
광진구청장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
  - 2) 사업의 명칭 : 7호선 공릉외 7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3공구)
  - 3) 사업의 목적 : 중곡역 1번출구에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이용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다. 사업 규모
  - 1) 위치 : 광진구 중곡동 30-1 일대
  - 2) 면적 : 35.8㎡
  - 3) 내용 : 중곡역 1번출구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15인승)
- 라. 사업시행자 : 서울도시철도공사(성동

- 구 용답동 223-3)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로부터 ~ 2009.12.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따로붙임
- 사.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생략
- 아. 관계도서 : 생략(광진구청 교통행정과(☎450-7913) 비치).

## 토 지 조 서

1. 사 업 명 : 7호선 공릉외 7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3공구)
2.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광진구 자양로 150), 서울도시철도공사(성동구 용답동 223-3)
3.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
4. 사업의내용 : 중곡역 1번출구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15인승)
5. 토지조서 내용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1	광진구 중곡동	30-77 (30-1)	대	40,450.3	35.8	보건복지가족부	서울 광진구 중곡동 30-1외 1필지	-	-	-		

**◆ 중랑구공고 제2009-3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6-13(2008. 4.24.)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8-49(2008. 11.12.)호로 인가고시된 서울시 중랑구 목동 43-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목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전화 : 490-3395~8, 전송 : 490-3611)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오니, 본 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관계인은 의견서를 열람공고 기간내 의견제출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3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목동 43-7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2) 사업의 명칭 : 목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358㎡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마.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변경)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자. 열람장소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490-3395~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 사업명 : 목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번	지 적 (㎡)		지목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목동 35-2	295	지분19분의1	제방	주택지	운명덕	동대문구 휘경동 49-5							
				지분19분의4	주택지								김찬희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74-1
				지분19분의1	주택지								김계순	경기도 남양주시 용정리 156
				지분19분의4	주택지								김광희	마포구 도화동 536
2	목동 35-13	70	지분19분의1	제방	주택지	김재욱	성북구 장위동 70-46							
				지분19분의4	주택지	김재봉	강북구 미아동 889-52							
				지분19분의4	주택지	김신희	광진구 증곡동 191-114							
				지분19분의4	주택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3	목동 49-47	16	대지	주택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4	목동 25-1	23	도로	주택지	중앙구	중앙구 봉화산길 179								
5	목동 43-7	129	제방	주택지	중앙구	중앙구 봉화산길 179								
6	목동 43-12	102	제방	주택지	중앙구	중앙구 봉화산길 179								
7	목동 43-14	159	제방	주택지	중앙구	중앙구 봉화산길 179								
8	목동 43-15	109	제방	주택지	중앙구	중앙구 봉화산길 179								
9	목동 43-16	26	제방	주택지	중앙구	중앙구 봉화산길 179								
10	목동 43-18	159	제방	주택지	중앙구	중앙구 봉화산길 179								
11	목동 43-19	129	제방	주택지	중앙구	중앙구 봉화산길 179								
12	목동 43-20	1	제방	주택지	중앙구	중앙구 봉화산길 179								
13	목동 49-42	79	대지	주택지	창인수	중앙구 목동 49-42								
14	목동 49-48	139	대지	주택지	최강례	중앙구 목동 77-8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사서(변경)

사업명 : 목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

연 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면적·수량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목동 49-42외 (43-7포함)	건물	기외/조적	201㎡	주거,영업	장인수	중랑구 목동 49-42			
		가실물	판넬	5㎡	영업					
		불인건물	조적	36㎡	창고					
		창고	조적	13㎡	창고					
		철계대문		1식						
		화장실	조적	5㎡						
		수도계량기		3식	영업용1					
		전기계량기		6식	영업용3					
		도시가스		4세대						
		수목	행1,목단 1	2주						
		컨테이너	2m*5m	1식						
영업휴업	슈퍼		한울슈퍼							
영업시설	슈퍼		한울슈퍼							
이전비			한울슈퍼							
간판	6m*1m									
자판기		1식								
2	목동49-42	이전비	쌍둥이포차			박덕순	노원구 상계동740 주공아파트223-1214			
3	목동 49-42	이전비	한울건설기계		덤프배차 시무실	이상미	중랑구 면목1동 543-17 지층 3호			
4	목동 49-42	간판	6m*2m		공장	김용석	중랑구 목동 49-42			
		영업휴업	뽕튀기							

연 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수량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	목동 43-13	건물	기와/세멘조	29㎡	주택	엄풍연	용산구 청파동2가 1-25번지 B02호			
		붙임건물	스레트/세멘	29㎡	주거					
		화장실	스레트/세멘	2㎡						
		대문	알미늄채시 1.7*1.3	2.21㎡						
		담장	블록9*1.7	15.3㎡						
		전기계량기		1식						
		수도계량기		1식						
		기름보일러		1식						
		담장(뒤쪽)	블록1.5*1.0	15㎡						
		장미나무		1식						
6	목동 43-14 (부속건물)	무궁화나무		2식		김현숙	증량구 목동 43-13			
		사철나무		2식						
		건물	기와/세멘	38㎡	주택					
		붙임건물	스레트/세멘	3㎡	보일러실					
		화장실	판넬	2㎡						
		전기계량기		1식						
		수도계량기		1식						
		담장	블록1.5*1.0	15㎡						
		수목	대추나무	1주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면적·수량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목동 43-14 (남측건물)	건물	스레트/ 블럭	28㎡	주택	육정환	종로구 연건동28 서울의대 연건기숙사102호			
		보일러실	나무판넬	2㎡						
		화장실	판넬	1㎡						
		담장	블럭1.5*5	7.5㎡						
		대문	알미늄새시	1식						
		전기계량기		1식						
		수도계량기		1식						
		건물	기와/세멘	44㎡	주택					
		가설물	스레트	17㎡						
		붙임건물		12㎡						
8	목동 43-15	창고		5㎡		조성락	양천구 신정동 337-7			
		화장실		2㎡						
		담장	블럭1.5*7	10.5㎡						
		대문	철재	1식						
		기름보일러		1식						
		전기계량기		1식						
		수도계량기		1식						
		수목	플라타너스	1식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면적·수량	이용 상황	성명	소유자		성명	관계인		비고
							주소	주소		성명	주소	
9	목동 49-48	건물	세멘트 블럭조	57㎡	주택	최강혜	서울 중랑구 목동 68-2 신우주택 7-301					
		연탄창고	세멘트 블럭조	2㎡								
		보일러실	세멘트 블럭조	2㎡								
		화장실	세멘트 블럭조	2㎡								
		전기계량기		3식								
		수도계량기		1식								
		기름보일러		1식								
		연탄보일러		2식								
		철대문	철재	1.7× 2.1								
		담장	블럭조	1.5× 5.0								
담장	블럭조	(1.5× 6)/2										
수목	리얼락	1주										
10	목동 49-48	건물	세멘트 블럭조	21㎡	주택	김강민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6 신동아(아) 701-703					
		가설물	스레트/ 세멘트 블럭조	9㎡								
		창고	세멘트 블럭조	5㎡								
		화장실	세멘트 블럭조	2㎡								
		전기계량기		1식								
		철대문	철재	1.5× 2.1								
		담장	블럭조	(1.5× 6)/2								

◆ **도봉구공고 제2009-3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열람**

1. 서울특별시 도봉구공고 제2008-622호(2008. 10. 08)로 열람공고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08-44호(2008. 11. 27)로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09-10호(2009. 2. 19)로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09-2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289-186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3일

도 봉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방학동 547번지 등 4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명칭 : 원당샘 주변 정비사업
- 다. 사업규모 : 3,230㎡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길 656(방학동 720번지)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0.12.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따로붙임
-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열람시간 09:00~18:00)
- 아. 열람장소 :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2289-1856 도봉구 방학동 720번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관리명세	
	계		3,439	1,721	3,230							
1	도봉구 방학동 547	전	165	84	165	이정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9-25 팜빌라 A동 501호					
						이정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34-13					
						이정옥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8 한강현대 아파트 111-704					
						노박경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271					
2	도봉구 방학동 544-3	전	1,901	492	1,901	이정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9-25 팜빌라 A동 501호					
						이정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34-13					
						이정옥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8 한강현대 아파트 111-704					
						노박경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271					
3	도봉구 방학동 544-11	전	1,373	1,161	1,161	도봉구						
4	도봉구 방학동 544-18	전	3		3	도봉구						

□ 물건 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격	면적 (㎡)		이용 상황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소유권 외의 권리	성명	주소		
당초	도봉구 방학동 547, 544-3	비닐하우스	높이2.5m×폭5m	294	1,440	채소 재배	이용관	서울시 도봉구 방학2동 630-5					

◆ **강서구공고 제2009-372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1. 강서구고시 제2009-28호(2009.4.23)로 최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강서구 방화동 127번지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에 대하여
2.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아래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3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조성

나. 사업시행지 : 강서구 방화동 127번지다. 사업의규모 : 89㎡

라. 사업의내용 : 휴식공간(녹지) 조성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바. 사 업 기 간 : 인가일로부터 ~ 2009.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 첨부

아. 열람장소 및 기간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2657-8689)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연번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계		1필지	89	89						
1	방화동 127	공공공지	89	89	방화3동 831 방화아파트 402-1103	권지안				

**◆ 구로구공고 제2009-310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를 위한 공람**

1.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09-22(2009.03.24)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구로구 개봉동 산 2-21번지 외 1필지 온수도시자연공원 잣절지구 진입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푸른도시과(☎02)860-239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가름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구 로 구 청 장

가. 공람개요

- 1) 사업시행지 : 구로구 개봉동 산 2-21번지 외 1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 사업의 명칭 : 온수도시자연공원 잣절지구 진입광장 조성사업
- 3) 사업의 내용
  - 면 적 : 56㎡
  - 사업규모 : 토지보상 및 진입광장 조성 등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나. 공람의 기간 및 장소

- 1) 공람기간 : 공고일(시보게재일) 익일로부터 20일간
- 2) 공람장소 : 구로구 푸른도시과(☎02)860-2396)

사용 또는 수용 할 토지조서

토지조서

연번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	
계			56						
1	개봉동 산2-21	임	2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51-3 우봉빌딩 303호	부성주택(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	압류 (세무2과- 10303)	
2	개봉동 45-1	전	35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2680 티스틴시 월너트로 17272 아파트 47	김범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서울관리3센터)	대한주택 보증(주)	강제경매 개시결정	

**◆ 서초구공고 제2009-331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열람**

2009년 4월 23일  
 서 초 구 청 장

서초구 양재동225번지의 6필지 한국트럭 터미널 복합화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처리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통업무설비, 도로, 녹지)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안사유  
 사업부지에 접한 기존 도로 및 녹지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이에 따른 유통업무설비의 면적을 조정하기 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	35	집산 도로	380	양재동 222 광1-28	양재동 224 지구계	일반 도로	화 물 터미널	01.09.22 (서초구 고시312)	시도
변경	광로	3	-	41~47m	집산 도로	380	양재동 222 광1-28	양재동 224 지구계	일반 도로	화 물 터미널		

나. 공간시설

1)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③	녹 지	완충 녹지	양 재 대로변	21,170	증)59	21,229 (1,064)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유통업무설비

○ 총괄조서

구 분	시설명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유통업무설비	-	서초구 양재동 214번지일대	340,261.28	감)10,014.90	330,246.38	841.9 (건고1호)	

##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전체조서

구분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유통 업무 설비	계	서초구 양재동 214번지일 대	340,261.28	감)10,014.90	330,246.38	84.19 (건고1호)	
		사무소	양재동 214	15,355.20	-	15,355.20		
		대규모점포 (도매센터, 대형점), 집배송시설	양재동 215	28,972.30	-	28,972.30		
		간이주유소	양재동 216외1	8,151.90	-	8,151.90		
		화물터미널	양재동 217-7외2	3,768.50	-	3,768.50		
		자동차매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자동차 경매장	양재동 217외3	12,858.90	-	12,858.90		
		대규모 점포	양재동 217-6	9,598.50	-	9,598.50		
		집배송시설	양재동 222외1	17,477.20	-	17,477.20		
		도매시장	양재동 223외1	32,803.00	-	32,803.00		
		화물자동차정류장	양재동 224	10,342.70	-	10,342.70		
		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양재동 225외6	96,017.40	감)10,014.90	86,002.50		금회 변경
		생활물자저장소	양재동 229외2	17,539.30	-	17,539.30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양재동 230외2	64,438.40	-	64,438.40		
		자동차매매업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양재동 231	22,937.98	-	22,937.98		

○ 금회변경 조서

구분	도시 계획 시설	위 치	면 적 (㎡)	세부시설	건축규모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 이	
기정	유통 업무 설비	양재동 225외 6필지	96,017.40	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60% 이하	400% 이하	해발190m 이하 (단,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적용)	
변경	유통 업무 설비	양재동 225외 6필지	86,002.50	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60% 이하	400% 이하	해발190m 이하 (단,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적용)	도로 8,950.90㎡ 녹지 1,064.00㎡

-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 96,017.40㎡ → 86,002.50㎡ - 감)10,014.90㎡	○ 도로, 녹지 중복 결정부분 제척에 따른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 도로 : 8,950.90㎡ - 녹지 : 1,064.00㎡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02-2155-6784)
  -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제2동주민센터(☎02-2155-7871)
5.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6.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고제2006-770호(2006.11.0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6-71호(2006.12.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천호동 357-12~357-1간 천호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완료공고 합니다.

◆ 강동구공고 제2009-3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서울특별시강동구고시 제2005-59호(2005.10.

2009년 4월 23일  
강 동 구 청 장

사 업 명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지	사업시행자	사업개요	사업기간
천호동357-12~357-1간 천호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강동구 고시 제2006-71호 (2006.12.07)	천호동 357-12~357-1간	강동구청장	도로확장 B=8→15m,L=65m 흡관부설 D=1000mm,L=68m	2006.12.07 ~ 2009.03.30

**◆ 강동구공고 제2009-308호  
건축허가제한**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한강변 주거지역의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 461-27번지 일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60호(2009.04.23)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건축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 공

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강 동 구 청 장

1. 건축허가제한 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항·제3항
2. 제한기간 : 2009.04.24~2010.04.23  
(단, 건축허가제한 기간이내라도 관련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지역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결정·고시하는 경우 결정·고시일로 한다.)

3. 제한구역

위 치	면 적	비 고
강동구 천호동 461-27번지 일대 한강변 주거지역	94,643㎡	

4. 제한목적

-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동구 천호동 461-27번지 일대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한강변 주거지역의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으로 필지별 단독건축으로 인한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여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

※ 예외사항

- 지구단위계획 정비 방향에 부합되는 개발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재해등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건축허가·건축신고

5. 제한내용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제외)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제외)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단,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사항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을 통한 세대수 증가행위(건축물대장전환 포함)

6. 관계도서 : 생략(서울특별시청 주택국 건축기획과 및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7. 기타사항

-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주택국 건축기획과(☎6361-3946), 강동구청 도시계획과(☎480-1386), 천호2동주민센터(☎489-043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사업소고시

###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9-6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지사 대표 전우상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번지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2척 (기선1,부선1)	한강교량 D선 점검통로설치 기타공사	2009. 4. 15. ~ 2009. 9. 18.	2009. 4. 14.

###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9-6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

3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장 (치수과장)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왕십리길 544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7척 (기선2,부선5)	한강 저수로 정비 공사에 따른 선박운항	2009. 4. 16. ~ 2009. 10. 31.	2009. 4. 15.

###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9-6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

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장 (치수과장)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왕십리길 544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5척 (기선1,부선4)	상수원 취수장 정비 공사에 따른 선박운항	2009. 4. 16. ~ 2009. 10. 31.	2009. 4. 15.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9-6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

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삼부토건(주) 대표 정진우	서울시 중구 남창동 9-1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2척 (작업예산1, 작업부선1)	한강하류권 급수체계구축 제6공구 도수시설공사	2009. 4. 17. ~ 2009. 4. 30.	2009. 4. 17.

**사업소공고**

**◆ 용산소방서공고 제2009-2호  
방화관리자 업무 자격 정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용 산 소 방 서 장

대상자	육 동 준
생년월일	1933년 04월 20일
자격종별	강습 수료
수첩번호	99-서울-1-001937
업무정지일	2009년 04월 15일
처분사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위 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797-1190, 792-2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소방서공고 제2009-23호  
방화관리자 업무정지처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위반한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광 진 소 방 서 장

연번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별	수첩번호	업 무 정지일	처분사유
1	유동진	70.09.18	강습수료	97-서울-1-002233	2009.4.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교육)위반
2	고영효	32.06.18	“	2004-서울-1-009180		
3	박성엽	20.10.02	“	97서3-000104		
4	홍학기	57.11.12	“	1985-인천-2-000070		
5	김준희	73.12.08	“	2002-01-22-1-000601		
6	김일심	47.02.10	“	92-4910		
7	박보현	80.07.19	“	2005-경기-2-001110		
8	서원균	62.01.09	“	1993-서울-1-006858		
9	구기승	55.02.10	“	97-서울-1-005873		
10	박재범	62.01.23	강습수료	99-서울-1-007086		

연번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별	수첩번호	업 무 정지일	처분사유
11	최창수	64.06.03	“	94-서울-006682	2009.4.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교육)위반
12	박현주	73.06.28	“	2005-경기-2-000385		
13	염준환	77.09.02	“	2000-서울1-003186		
14	최동수	30.05.27	“	1993-01-22-1-10150		
15	강성록	56.11.19	“	2003-서울1-009727		
16	김종래	63.02.19	“	2003-서울-1-008367		
17	김영근	37.12.23	“	95-서울1-005134		
18	김완세	52.02.03	“	2004-서울-1-002591		
19	오천수	23.02.27	“	2002-서울-1-008911		
20	구자중	56.02.25	“	92사5262		
21	한대수	59.02.14	“	1987-11-22-2-003358		
22	최찬익	65.10.10	“	2006-01-22-3-000057		
23	지용규	60.03.26	“	2005-서울-2-002965		
24	김순환	62.01.12	“	2003-서울-1-002309		
25	박갑재	48.09.17	“	96-서울-1-003284		
26	양태희	75.01.14	“	2001서울1-004673		
27	박영철	74.03.20	“	2003-서울-1-006277		
28	김호택	56.04.10	“	1992-01-22-1-012319		
29	박영오	64.01.20	“	2005-01-22-		
30	조명진	60.10.05	“	2006-01-22-4-000454		
31	이석진	86.11.25	“	2005-서울-2-003890		
32	정광식	54.01.29	“	2001-01-22-1-001492		
33	서호원	72.01.16	“	1-000262		
34	김현철	65.12.04	“	2004-서-1-003557		
35	차인환	44.04.05	“	98-서울-1-003706		
36	이종우	87.06.27	“	2006-01-22-2-000972		
37	홍미미	69.03.10	“	2005-서울-2-003555		

연번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별	수첩번호	업무 정지일	처분사유
38	장용주	78.07.30	강습수료	2005-서울-2-004299		
39	박윤진	56.08.06	“	2003-서울-006615	2009.4.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교육)위반
40	고창범	69.08.23	“	제94-서울-004356		
41	정찬중	46.11.20	“	2000-서울-1-001718		
42	이태용	29.04.18	“	2001-서울-1-002515		
43	강동순	59.12.12	“	2004-서-1-00316		
44	홍태식	59.09.09	“	2002-서-1-006261		
45	이종분	54.02.11	“	2003-서울-1-005727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02-446-2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랑소방서공고 제2009-2호**  
**방화관리자 업무정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규정에 위반한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를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중랑소방서장

건물명	소재지	방화 관리자	업무 정지일	생년월일	수첩번호	적용 법조항
세모하이츠아파트(B동)	중랑구 면목2동 132-64	심재인	4.17	62.11.01	2003-서울-1-01129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염태범건물	중랑구 면목8동 51-1	김지환	4.17	35.09.08	2003-서울-1-011988	
건설빌딩	중랑구 묵1동 160-2	한종근	4.17	62.08.01	2001-서울-1-002560	
양지빌라 (민경식건물)	중랑구 묵1동 302-9	양선진	4.17	38.04.20	2003-서울-1-002738	
박희백의원건물	중랑구 묵2동 250-1	김응주	4.17	70.08.03	2003-서울-1-005259	
노의숙건물 (신광빌딩)	중랑구 상봉1동 286-20	민정식	4.17	61.06.11	B2305103351	
성신상가빌딩	중랑구 상봉2동 136-1	석경환	4.17	35.12.29	2005-01-22-2-006566	
영미빌딩	중랑구 상봉2동 136-2	서양희	4.17	68.08.22	2003-서울-1-006169	
송봉천건물	중랑구 신내1동 493-145	송정운	4.17	70.08.14	제92-서-870호	
에센시아 (구 신영약품)	서울 중랑구 중화1동 287-11	신우호	4.17	80.08.02	2002-충북-1-000609	
김창식건물	중랑구 중화1동 295-25	김창식	4.17	54.11.30	2006-01-22-2-003316	
김영희건물 (오성빌딩)	중랑구 중화3동 332-41	윤인숙	4.17	61.02.09	2004-서울-1-002698	

**◆ 성북소방서공고 제2009-4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성 북 소 방 서 장

업종 (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	제성북2009-3호 (2009.04.17.)	주식회사 기해기업	이주용 (1965.02.17.)	성북구 석관2동 337-1 동우빌딩	☎960-6230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성북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924-81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북소방서공고 제2009-5호  
방화관리자 업무정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방화관리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

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성 북 소 방 서 장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자격종별	수첩번호	업 무 정지일	처분사유
1	최재영	1936년06월18일	강습수료	92-사-3693	2009. 04.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위반
2	김근찬	1928년05월27일	강습수료	97-서울-1-007367		
3	이경한	1971년05월14일	강습수료	2001-서울-1-003564		
4	오경남	1944년01월08일	강습수료	2003-서울-1-000541		
5	양철호	1978년03월01일	강습수료	2004-서울-1-002137		
6	김형수	1967년07월02일	강습수료	2002-서울-1-008355		
7	홍기봉	1962년07월08일	강습수료	2003-서울-1-009448		
8	양우근	1950년08월18일	강습수료	2004-서울-1-006557		
9	김현수	1982년09월13일	강습수료	2004-서울-1-00840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과 예방팀 ☎ 02-925-09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소방서공고 제2009-3호  
방화관리자 자격(업무)정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방화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자

격)정지 처분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  
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  
니다.

2009년 4월 23일  
노 원 소 방 서 장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자격종별	수첩번호	업무정지일	처분사유
1	현종명	68.10.15	강습수료	2006-01-22-2-06233	2009.04.1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교육) 위 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과 예방팀(02-979-411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화관리자 업무정지대상 현황**

연번	관할서	건물명	주소	전화번호	방화관리자	업무정지일	주민등록번호	수첩번호
1	노원	대영빌딩	노원구 월계1동 508-9		현종명	2009.04.17	681015-1*****	2006-01-22-2-06233

**◆ 서대문소방서공고 제2009-21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대문소방서장

업종	등록번호 (등록월일)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제서대문2009-1호 (2009.04.17)	(주)명심씨엔씨	정희환 (1959.12.18)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09-1 보영빌딩2층	2009.04.17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02)3144-1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소방서공고 제2009-4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강서소방서장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일반(전기) 소방시설공사업	제강서2009-2호 (2009.04.14)	(주)은하전기	정기덕 (1950.09.15)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79-8	☎2694-4040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 02-3664-5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소방서공고 제2009-15호  
방염처리업체 행정처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44

조[별표6]제2호가목(2)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구로소방서장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적용법규
(주)나은방재시스템 (구로구 공동 95 신우유니온빌딩 4층)	정영란	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 제구로2008-1호 2008.03.03.	등록기준 (기술인력)미달 -2차 차수적용	소방시설설 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영업정지3월 (2009.04.14 ~ 2009.07.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별표6]제2호가목(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소방서 예방과(☎ 2682-50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소방서공고 제2009-16호  
방화관리자 업무정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방화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

지 처분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구 로 소 방 서 장

대상자	나근희	김민수	송호섭	표현종	최경자
자격종별	강습	강습	강습	강습	강습
수첩번호	2005-서울-2-001659	2089	2001-서울-1-006471	305	1997-04-22-1-000953
업무정지일	2009.04.20	2009.04.30	2009.04.20	2009.04.20	2009.04.20
처분사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위반				

대상자	곽상희	이명환	박명진	신덕현	임경준
자격종별	강습	강습	강습	강습	강습
수첩번호	03-1-008132	2005-서울-2-00346 7	05서울2-002812	2004-서울-1-007775	제98-서울-1-003499호
업무정지일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처분사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위반				

대상자	김영중	조용주	연재호	이현기	민두기
자격종별	강습	강습	강습	강습	강습
수첩번호	03-1-005135	04경기북부01-000900	95서울1-006097	93-1-경기-001177	95서울-1-001167
업무정지일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처분사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위반				

대상자	김상철	조영민	김범준	김찬기	구기창
자격종별	강습	강습	강습	강습	강습
수첩번호	03-01-1-010022	03-1-007470	2006-01-22-2-004532	1992-서울-1-000145	1897
업무정지일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처분사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위반				

대상자	구기종	윤정섭	정해윤	오현숙	양선수
자격종별	강습	강습	강습	강습	강습
수첩번호	82302010326	2004-서울-1-007703	2006-01-22-2-003400	2004-서울-1-010746	00-서울-2450
업무정지일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처분사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위반				

대상자	김찬길	장홍수	이문진	정양운	문영환
자격종별	강습	강습	강습	강습	강습
수첩번호	04-서울-1-1092	2005-충남-2-001326	93가-8080	92204050113U	04-서울1-00746
업무정지일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처분사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위반				

대상자	방현일	강성한	김은혜	강석기	이학규
자격종별	강습	강습	강습	강습	강습
수첩번호	22093	2001-01-1-007315	93-1372	99-서울-1-002855	98-1-004881
업무정지일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처분사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위반				

대상자	박찬배	임갑순	김선춘	구정현	심동진
자격종별	강습	강습	강습	강습	강습
수첩번호	93-서-0927	2002-서울-1-1003190	2004-서울-1-010477	05서울2-132	2000-서울-1-001725
업무정지일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처분사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위반				

대상자	이경섭	한현순	박사길	이사범	김숙연
자격종별	강습	강습	강습	강습	강습
수첩번호	05-01-22-2-005955	2004-서울-1-008827	2000-서울-1-001180	2006-01-22-2-003517	2006-01-22-2-005828
업무정지일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처분사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위반				

대상자	김병희	이경석	김정순	전막동	박인순
자격종별	강습	강습	강습	강습	강습
수첩번호	77258408208	2002-서울-005030	2004-서울-1-003401	96-서울-2-89	94서울005641
업무정지일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2009.04.20
처분사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위반				

대상자	김명호				
자격종별	강습				
수첩번호	02-1-009025				
업무정지일	2009.04.20				
처분사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위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2618-310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소방서공고 제2009-19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강 남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등급및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공 사업	제강남2009-9호 2009.04.15	삼정건설이엔지 주식회사	용 응 식 (550207-1*****)	서울 강남구 논현동 58-1	548-6114

※ 기타 자세한 문의로는 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 568-11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소방서공고 제2009-11호**  
방화관리자 업무정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화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처

분을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규  
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송 파 소 방 서 장

연번	①대상자	②생년월일	③자격종별	④수첩번호	⑤ 업무정지일	⑥처분사유
1	여장호	49.4.11	강 습	96-서울-1-004275	2009.4.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위반
2	김인환	43.9.20	강 습	2004-서울-1-002411	2009.4.21	
3	신화균	30.1.5	강 습	2001-서울-1-002368	2009.4.21	
4	이금선	45.5.15	강 습	2004-서울-3-000514	2009.4.21	
5	이성상	60.3.6	강 습	2003-서울-3-000051	2009.4.21	
6	염광길	41.11.25	강 습	2002-서울-1-009600	2009.4.21	
7	성재욱	77.9.1	강 습	2004-서울-1-008523	2009.4.21	
8	김국일	72.9.23	강 습	2002-서-1-009068	2009.4.21	
9	조성상	32.1.28	강 습	2003-서울-1-005246	2009.4.2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과 예방팀(Tel:431-41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